



정책자료 2022-04

#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김태완  
한수진·이주미



##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진	한수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주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정책자료 2022-04

###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ISBN 978-89-6827-930-0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f.2022.04>

## 발|간|사

기초보장제도 현장 모니터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과 기초보장제도 관련 현장 전문가를 포럼 위원으로 구성하여 기초보장제도의 운영 및 집행 관련 현안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최근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넘어 다양한 사회문제와 사회보장제도까지 모니터링 범주를 확대해 오고 있다. 올해는 이 사업이 시작된 지 14년째가 되고 있으며, 8기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2022년 모니터링의 주제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의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측면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에 대한 문제와 개선사항, 새롭게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자활사업 간의 연계, 개선을 위한 사항에 대해 1차 및 2차 포럼을 진행하였다. 3차와 4차 포럼은 우리 사회 새로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로 관심을 두고 있지 못했던 대상자와 이들을 발굴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따라서 3차 포럼은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4차 포럼은 송파세모녀 이후 도입된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2022년 수원세모녀 사건을 통해 재 조명 되면서 현재의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대해 세밀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모니터링을 통해 살펴본 사항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범주를 넘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다시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번 모니터링 포럼을 통해 제안된 다양한 의견이 사회복지 전문가, 학생 및 관심 있는 시민단체 등에게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연구진은 바라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2년 상반기는 정해식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박성준 연구원이 하반기는 김태완 빈곤·불평등연구실장 책임하에 한수진 연구원,

이주미 전문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였다. 올해도 포럼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주시고 서면으로 의견을 주신 제8기 모니터링 포럼 전문위원에게 감사드린다. 사업의 운영 방향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우리 원의 빈곤·불평등연구실 연구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연구자의 견해임을 밝힌다.

202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b>제1장 서론</b> .....	1
제1절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의 필요성 .....	3
제2절 주요사업내용과 현장모니터링 운영방법 .....	6
<b>제2장 재산의 소득환산 관련 이슈 및 현황</b> .....	11
제1절 재산의 소득환산 관련 모니터링 개요 .....	13
제2절 모니터링 결과 .....	21
<b>제3장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빈곤층 대상 취업지원서비스와     관련 제도와의 관계</b> .....	57
제1절 모니터링 개요 .....	59
제2절 모니터링 결과 .....	64
<b>제4장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실태 및 지원 체계</b> .....	89
제1절 모니터링 개요 .....	91
제2절 모니터링 결과 .....	96
<b>제5장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발굴관리시스템의 성과와 한계</b> ....	107
제1절 모니터링 개요 .....	109
제2절 모니터링 결과 .....	119
<b>참고문헌</b> .....	145

# 표 목차

---

〈표 1-1〉 제8기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 전문위원단 .....	7
〈표 2-1〉 소득인정액 기준 비수급빈곤층 변화 .....	13
〈표 2-2〉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로드맵 .....	14
〈표 2-3〉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	14
〈표 2-4〉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변화 .....	15
〈표 2-5〉 기본재산액 공제적용 금액 .....	16
〈표 2-6〉 2023년 제도 변화 : 기본재산액, 주거용재산한도액 및 금지구분 변경 등 .....	17
〈표 2-7〉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	18
〈표 3-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지원급여 .....	61
〈표 3-2〉 국민취업지원제도 I, II 유형 비교 .....	61
〈표 4-1〉 2017~2022년 자립준비청년 현황 추이 .....	91
〈표 4-2〉 2021년 자립준비청년 최종학력 .....	92
〈표 4-3〉 2023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	93
〈표 5-1〉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 34종 연계정보 현황 .....	114
〈표 5-2〉 복지 사각지대 대책 전후 비교 (수원 세모녀 사례) .....	116

#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그림 5-1]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 개념도 .....	112
[그림 5-2]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주요 추진과제 .....	116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 1 장

## 서론

제1절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의 필요성

제2절 주요사업내용과 현장모니터링 운영방법



# 제 1 장 서론

## 제1절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의 필요성

-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다른 복지국가에 비해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음
  - 1990년대와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면서 빈곤층은 물론 노동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대상으로 사회보장 영역이 확대되어 옴
  - 현재는 주요 복지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할 사회보장제도가 체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갖추어지고 있음
- 정부의 지속적이고 확장적인 사회보장제도 발전 방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소외되고 배제된 계층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원의 필요성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이 상존
  -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이나 언론 등을 통해 접하고 있는 은둔, 고립으로 인한 대상자, 생활고 등으로 인해 개인 혹은 가족이 모두 불행한 상황을 경험하는 등 여전히 취약한 대상이 많이 존재
  - 이와 같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גיע층을 발굴하고 현 사회보장제도의 미흡한 점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은 매우 필요한 상황임

#### 4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의 필요성이 사회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이라면, 제도를 악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정적 요인 또한 함께 존재
  - 사회보장을 수급받기 위해 부정수급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다양한 검토가 수행되고 있지만, 현 제도상 미비한 상황이 여전히 존재
  - 따라서 제도에서 포괄하고 있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2022년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기존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2023년 예정된 기초생활보장제도 3차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
  - 2014년 발생한 송파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왔지만 여전히 제도권내로 포괄되지 못하고 불행한 상황을 경험하는 취약층이 발생중
    - 2022년에는 이들 취약계층 중 우선적으로 보호종료아동, 현재는 자립준비청년으로 바뀐 이들의 현황과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또한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계속해서 고도화 했음에도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면서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함
  - 2023년은 3차 기초생활보장 계획 수립이 예정되어 있으며, 지난 정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재산기준 개선이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2022년 모니터링에서는 재산기준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개선방안이 없는지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
- 근로연계복지의 강조와 더불어 장기실업, 불안정 취업자, 미취업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족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 운영 중
  - 동 제도가 근로빈곤층을 포괄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자활사업 간의 제도간 관계를 살펴보는 모니터링을 수행
- 2022년 논의된 모니터링 사업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준비를 사전에 기획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8기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현장전문가의 주요한 의견은 향후 우리 원의 연구방향과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정책 개선을 위한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제2절 주요사업내용과 현장모니터링 운영방법

- 2022년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사업은 2021년에 선임된 8기 전문위원 28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표 1-1참조)
  - 8기 전문위원은 2008년 사회보장 모니터링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활동하며 여전히 사회보장, 사회정책 방향 수립과 개선에 기여하고 계시는 분과
  - 새롭게 전문위원으로 추천되어 현장의 상황을 명확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전달해주시는 신규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
  
- 지역적으로도 수도권은 물론 전국을 단위로 하여 28명의 전문위원이 활동하고 계시며, 지역적으로는 시군구는 물론 도시와 농촌을 대상으로,
  - 전문분야로는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아동, 청년 등 다양한 사회복지분야 전문위원이 활동하고 있음
  - 2022년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네차례의 정규포럼을 진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것은 물론 부정기적으로 우리 원 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위한 여러 자문과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있음
  
- 2023년은 다시 9기 전문위원이 위촉될 예정이며, 역시 기존 전문위원을 필두로 신규위원 등이 조화롭게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하며,
  - 모니터링과 자문 역시 사회보장 영역을 넘어 사회정책으로 확대하여, 우리 사회에서 취약하고 부족한 대상을 발굴하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표 1-1〉 제8기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 전문위원단

구분	이름	지역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직급
1	강영란	전북	군산시청	의료보장팀	팀장
2	강원선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주민센터	동네복지팀	팀장
3	곽동순	전북	전주시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팀장
4	김근영	제주	제주시청	조천읍 맞춤형복지팀	팀장
5	김금순	서울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팀장
6	김선숙	인천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국	팀장
7	김성희	대전	동구 효동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복지팀	팀장
8	김연실	충남	서천군 서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팀장
9	김영문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청	부강면행정복지센터	주무관
10	김영숙	충남	충남 금산군 금산다락원	복지팀	팀장
11	김진호	광주	광산구청	복지정책과	팀장
12	남궁명	강원	홍천군청	복지정책과	과장
13	마형준	전북	장수군 계북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팀장
14	문형규	경남	의령군 칠곡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팀장
15	박설희	경북	울진군청	희망복지팀	주무관
16	서경애	경기	광명시청	복지정책과	팀장
17	오복경	충남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18	이동형	경북	안동시청	사회복지과	팀장
19	이명숙	전북	임실군청	여성청소년과	팀장
20	이상복	경기	광주시노인복지관		관장
21	이정석	인천	부평구청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22	임영란	서울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복지서비스팀	과장
23	장화정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본부장
24	조만선	경남	산청군 신등면사무소	신등면사무소	면장

8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구분	이름	지역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직급
25	최은희	충남	사회복지법인 계룡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
26	최재권	경기	고양시청	복지여성국 아동청소년과	주무관
27	한주현	세종	아름동 주민센터	복지행정과	주무관
28	허수자	충남	서천군 시초면행정복지센터	시초면행정복지센터	면장

□ 2022년 사회보장 현장 및 실무자 대상 모니터링 포럼은 총 4회에 걸쳐 수행

○ 1차 모니터링 포럼

- 주제 : 재산외 소득환산 관련 이슈
- 일시 : 2022년 6월 15일 15:30 ~ 17:00
  - 코로나 지속으로 인해 대면이 아닌 온라인 방식으로 수행

○ 2차 모니터링 포럼

- 주제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빈곤층 대상 취업지원서비스와, 관련 제도와의 관계
- 일시 : 2022년 8월 23일 15:30 ~ 17:00
  - 1차에 이어 코로나 지속으로 인해 대면이 아닌 온라인 방식으로 수행

○ 3차 모니터링 포럼

- 주제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실태 및 지원 체계
- 일시/장소 : 2022년 10월 20일 14:00 ~ 16:00, 세종시티 오송호텔



○ 4차 모니터링 포럼

- 주제 :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발굴관리시스템의 성과와 한계
- 일시/장소 : 2022년 12월 12일 14:00 ~ 16:00, 서울 코리아나 호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2장

### 재산의 소득환산 관련 이슈 및 현황

제1절 재산의 소득환산 관련 모니터링 개요

제2절 모니터링 결과



## 제 2 장 재산의 소득환산 관련 이슈 및 현황

### 제1절 재산의 소득환산 관련 모니터링 개요

#### 1. 사업의 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오랜 기간 한국의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 중
- 빈곤층과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와 추가적 현물급여 등을 제공함으로써 수급가구와 수급자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옴

〈표 2-1〉 소득인정액 기준 비수급빈곤층 변화

구분	'03년 기준 1차조사	'06년 기준 2차조사	'10년 기준 3차조사	'14년 기준 4차조사	'15년 기준 5차조사	'18년 기준 6차조사
비수급 빈곤층	177만명	103만명	117만명	118만명	93만명	73만명
	(최저생계비 100% 이하)			(중위소득 40%이하)	(기준중위 소득40%이하)	(기준중위 소득40%이하)
차상위 계층 기준 비수급 빈곤층	86만명	67만명	68만명	85만명	51만명	59만명
	(최저생계비(100%)~120% 이하)			(중위 40~50% 이하)		
차상위 포함 비수급 빈곤층	263만명	170만명	185만명	203만명	144만명	132만명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안) (p12 재인용)

14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정부는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으며, 더불어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기준중위소득을 개편하여 비수급빈곤층의 포괄성을 확대

○ 2021년 10월 생계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기준중위소득 역시 단계별로 상향조정되고 있음

〈표 2-2〉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로드맵

구분	2015년 7월	2017년 11월	2018년 10월	2019년 1월	2020년 1월	2021년 1월	2021년 10월
생계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노인·중증장애인 포함된 가구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구 (만 30세 초과)	그 외 가구대상
의료급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소득 하위 70%)	부양의무자 가구 노인이 포함된 가구 (소득 하위 70%)		
주거급여			폐지	유지			
교육급여	폐지	유지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안)

〈표 2-3〉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
생계급여	28%	29%	30%				35%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44%	45%	46%	47%	50%	
교육급여	50%									

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표 2-4〉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변화

(단위: 원, %)

	1인가구	상승률	2인가구	상승률	3인가구	상승률	4인가구	상승률	5인가구	상승률
2015	1,562,337	-	2,660,196	-	3,441,364	-	4,222,533	-	5,003,702	-
2016	1,624,831	4.00	2,766,603	4.00	3,579,019	4.00	4,391,434	4.00	5,203,849	4.00
2017	1,652,931	1.73	2,814,449	1.73	3,640,915	1.73	4,467,380	1.73	5,293,845	1.73
2018	1,672,105	1.16	2,847,097	1.16	3,683,150	1.16	4,519,202	1.16	5,355,254	1.16
2019	1,707,008	2.09	2,906,528	2.09	3,760,032	2.09	4,613,536	2.09	5,467,040	2.09
2020	1,757,194	2.94	2,991,980	2.94	3,870,577	2.94	4,749,174	2.94	5,627,771	2.94
2021	1,827,831	4.02	3,088,079	3.21	3,983,950	2.93	4,876,290	2.68	5,757,373	2.30
2022	1,944,812	6.40	3,260,085	5.57	4,194,701	5.29	5,121,080	5.02	6,024,515	4.64
2023	2,077,892	6.84	3,456,155	6.01	4,434,816	5.72	5,400,964	5.47	6,330,688	5.08

자료 : 보건복지부. (각 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단계적인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남아 있는 것은 재산기준임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외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가 되어야 함
  -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미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지만, 소득인정액 산정의 한 부문인 재산의 소득환산제도에 대한 개선을 미미한 상황
-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는 수급권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개인 능력을 판정함에 있어 자산을 고려하게 된다는 점과,
  - 자가나 전세에 거주함으로써 그에 해당되는 주거비가 추가적으로 지출되지 않음으로 해당되는 금액만큼 소득이 있다는 점을 고려

○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는 수급권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임

$$- \text{소득인정액} = \text{소득평가액}(\text{실제소득} - \text{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text{근로소득공제})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text{재산} - \text{기본재산액} - \text{부채}) \times \text{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는 기본재산액과 환산율로 구성

○ 기본재산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의미(보건복지부, 2022)

〈표 2-5〉 기본재산액 공제적용 금액

(단위: 만 원)

구분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3년	3,300	3,000	2,900		
2004년	3,800	3,100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5,400	3,40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		4,200	3,500
	의료급여	5,400		3,400	2,900

주: 1)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도의 “시”, 농어촌-도의 “군”  
 자료: 김태완, 김미곤 외(2020). 국민기초생활보장 20년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기본재산액의 경우 2020년 상향되어 대도시는 6,900만원(의료급여는 5,4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의료급여는 3,400만원) 등으로 조정됨
- 기본재산액과 관련하여 정부는 2022년까지는 기본재산액이 3개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구분되던 것을 2023년부터는 4개급지로 변경되면서 기본재산액과 주거용 재산에 대한 인정 범위를 크게 확대하기로 함
  - 4개 급지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기본재산액 수준도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등으로 크게 상향함
  - 이외에 재산범위 특례, 주거용재산한도액 등을 조정함으로써 빈곤층 사각지대가 더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2-6〉 2023년 제도 변화 : 기본재산액, 주거용재산한도액 및 급지구분 변경 등

〈 현 행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	의료	생계·주거·교육	의료	생계·주거·교육	의료
	기본재산공제액	6,900	5,400	4,200	3,400	3,500
재산범위 특례액	10,000	8,500	7,300	6,500	6,600	6,000
주거용재산한도액	12,000	10,000	9,000	6,800	5,200	3,800



〈 변 경 : 생계·의료·주거·교육 단가 동일 〉				
구분	(단위: 만 원)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기본재산공제액	9,900	8,000	7,700	5,300
재산범위 특례액	14,300	12,500	12,000	9,100
주거용재산한도액	17,200	15,100	14,600	11,200

자료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보도자료(2022.12.30.) 재인용

- 소득환산율은 수급권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기준하에 일반재산의 월 환산율을 4.17%로 설정. 이를 기초로 하여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및 자동차에 대해 별도의 환산율을 조정하여 사용 중

〈표 2-7〉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100%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2.08%	월 100%

자료 : 보건복지부.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2022년 모니터링에서는 위와 같이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제도와 관련하여 조사 수행
- 2023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이 예정되어 있어, 모니터링을 통한 의견 수렴은 향후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됨

## 2. 모니터링 내용 및 진행 방식

-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개선 관련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1차 포럼
  - 향후 제3차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 및 종합계획의 주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제도와 관련하여 7가지 설문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

□ 모니터링 요원 설문 내용

○ 질문 1) 기본재산 공제액에 대한 질문

- 공제액 수준은 4인 가족 최저주거면적의 전세가액 등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최근 지가 및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존의 기본재산 공제액 수준이 낮아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있음. 이에 대한 의견

○ 질문 2) 수급자 거주지 이동으로 인한 수급탈락 문제

- 거주지 이동에 따라 수급자격에서 탈락하거나 또는 상실에 대한 우려로 거주지 변경 의사를 철회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 중
- 현재의 기본재산액 기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설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면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하는지 의견
- 기본재산액 기준을 특정 기준에 연동하는 방식, 주거지 구분을 세분화하는 방안 등

○ 질문 3) 주거용자산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의견

- 주거용 자산은 환산에서 제외하거나, 현재보다 높게 설정하자는 견해가 있음.
- 기본재산액을 높게 설정할 때 기준은 무엇이 적정하고(예, 가구원수별 최저주거기준, 급지별 평균재산액 등), 설정한다면 기본재산액을 어느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의견

○ 질문 4) 자동차 환산율 조정에 대한 의견

- 자동차가 필수재에 해당된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견해와 환산

을 100% 적용 자동차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 사례를 들어 기술 부탁

- 자동차 환산율 적용의 대안에 대한 의견(환산율 인하, 연식과 배기량 기준 완화, 전기차 등 배기량과 무관한 자동차에 대한 가액 기준 설정 방법 등).

○ 질문 5) 여러 연구에서 재산의 컷오프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의견

○ 질문 6) 새로운 금융재산(비트코인 등)에 대한 의견

- 현재의 금융재산 및 부채기준이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적절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새로운 형태의 금융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경험하신 경우, 사례에 대한 의견 제시

○ 질문 7) 청년층 자산과 부채 문제 의견

- 청년층(29세 이하)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높으며(29.0%), 전체 주택관련대출 증가액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승(53.4%)하고 있음('20년 기준).
- 청년층 수급자와 관련하여 금융재산의 환산율 적용과 관련한 문제를 경험하신 바가 있다면 사례 제시

## 제2절 모니터링 결과

### 1. 기본재산 공제액 수준 상향 조정에 대한 의견

- (질문) 기본재산 공제액은 필수재적 성격의 주거재산의 일부분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어 주거재산에서 먼저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액 수준은 4인 가족 최저주거면적의 전세가액 등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최근 지가 및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존의 기본재산 공제액 수준이 낮아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 최근에 경험하신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술해주세요.

#### □ 전북 전주시

-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환산액이 발생
  -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생계급여가 감소하는 상황 발생
  - 가구원, 소득 등 변화가 없는 상황에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급권 변화에 저항이 심함
  - 수급권이 강화되고 확대되는 상황에서 필수재인 주거재산액 상승으로 인한 변경은 설득력이 없음
- 기본재산액 기준 증가나 환산율에 대한 조정 필요함

#### □ 서울 광진구

- 서울 등 대도시의 전세가액 상승으로 기본재산 공제액의 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가구원수 규모별 공제액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도시, 중소도시 등 지역별 차등만 반영하는 일률적인 공제액 상승은 의미가 없음

## 22 사회복지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이 많이 완화되었으나 대상자 가구의 기초공제액의 변화가 없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함.

-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의 환산액이 높아 대상자들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기도 함. 이에 시세를 반영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승하되 가구원별 차등 공제액이 필요함

### □ 세종시

○ 신도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물론 외곽 지역의 구축 아파트 및 원룸 등의 가격도 많이 올라 수급 신청 시 재산(토지, 주택)으로 인해 수급 탈락 발생

○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영향도 있겠지만 현재 공제금액이 낮아 수급 신청 시 선정이 안되는 분들이 계속해서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만큼 공제금액에 반영 필요

### □ 광주 광산구

○ 지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보증금이 5,000만원 이상인 곳도 있음. 4인 가구 복지대상자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였으나 보증금이 재산에 반영되어 급여가 감소하거나 중지된 경우가 있음.

○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보다 기본재산 공제액 수준이 낮아 조정이 필요해 보임.

### □ 강원 홍천군

○ 기본재산액에 대해서 지가 및 주택 가격상승이 되었다고 수시로

기본재산액을 건드려 수정하고 시스템 반영은 옳은 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

- 별도로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이 몇 % 이상시 논의 하여 기본재산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기준을 제시

□ 전북 임실군

- 거주하던 주거가격 상승으로 인해 복지급여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가구원수에 따라 또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본공제액기준을 조정

□ 경남 산청군

- 공제수준이 실제 전세가액에 비해 너무 낮은 실정임. 기본재산액은 5년 단위 정도에서 상향조정할 필요 있음.
  - 농촌 의료급여기준 기본공제액이 2900만원 임. 이는 신축한 지 30년 이상 노후된 작은 면적의 목조주택 정도에 해당되는 시가표준액임
- 사례, 지난해, 근소한 차이로 탈락된 수급권자는 내년쯤이면 물가 상승에 따라 기준중위소득도 상승될 것이므로 내년에 수급권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었으나, 올해가 되자 주택 등 시가표준액이 더 많은 비율로 상승하여 수급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음(재산범위특례에 미 해당되는 사례임)

□ 세종시

-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이 되는 대상자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 확인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담당 공무원은 토지, 집 등의 가격 상승으

로 인해 수급을 증지를 해야 하는데 각종 세액이 결정되는 것이 연초에 수급 기준을 정하는 것과 맞물리지 못하면서 매년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

- 연초 신청시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7월에 토지가격, 주택가격이 산정이 되면 오른 부분으로 인해 기준을 초과하게 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

□ 기타 의견

- 부동산 가격 상승,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인한 수급탈락, 급여 조정 등의 현상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 2. 부동산 환경을 고려한 기본재산액 기준 형평성에 대한 의견

■ (질문) 거주지 이동에 따라 수급자격에서 탈락하거나 또는 수급자격 상실에 대한 우려로 거주지 변경 의사를 철회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현재의 기본재산액 기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설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면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본재산액 기준을 특정 기준에 연동하는 방식
- 주거지 구분을 세분화하는 방안 등

□ 전북 군산시

- 공동주택 공시가 변동률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기본재산액은 거의 변동이 없음.
- 2015. 7월부터 맞춤형 개별급여가 시행되어 생계, 주거급여의



기본재산액은 인상하였으나 여전히 의료급여의 기본재산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도 초창기와 동일

- 물가지표나 공동주택 공시가 변동률, 개별지가 변동률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 전북 전주시

-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대상자의 경우 매매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와 오랫동안 살아왔던 거주지에 대한 미련 등으로 인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존재
  - 매매가 안되는 경우와 기타 예외 조항 등 증빙자료 제출로 인한 소명들로 인하여 기준을 특례화하여 산정하는 방식도 필요
- 기본재산액 기준에 따른 불평등은 어떤 산정방식을 도입해도 불가피한 경우는 생기기 마련이며 담당자의 조사 및 소명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구제함이 바람직

□ 제주 제주시

- 현재 기본재산액은 3개층으로 구분하여 지역적 주택가격 또는 전세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같은 도시지역, 중소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이라도 주택가격은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이 간헐적으로 이뤄지면서 도농복합 자치단체가 설치되고 있음.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 공제제도보다 좀 더 세분화된 운영 방안이 필요

□ 서울 광진구

- 대상자들이 거주지 이동시 이사전-후 임차 보증금 상한액 및 은행대출금상당 문의가 빈번하며,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재산 공제액 수준에 맞는 주거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월세액 조정 등으로 수급자격을 유지하려고 함.
-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이사할 경우에 기본재산 공제액 금액이 낮아져 발생하는 재산환산액 등으로 민원이 다수
  - 이에 주거지 변동에 따른 기본재산 공제액이 변경될 경우 변경되는 공제액에 대하여 일정기간 재산환산액의 비율을 특별적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충남 서천군

- 사례)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매가 부모 사망 이후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으나 취업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상속된 토지(대지)소유로 복지제도권에 제외가 되어 지원할 방법이 없어 곤란한 경우가 있음
  - 이 가구의 경우 토지는 자동상속으로 자매소유이나 부모세대에서 타인이 건물을 신축 임차업을 하고 있으나 부모가 토지사용승낙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물소유주는 건물사용에 불편이 없으므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거래할 의사가 전혀 없음.
  - 무늬만 토지소유자로 재산을 가지고 있으나 거래불가능한 토지로 인해 복지제도권에 수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음

□ 광주 광산구

- 가구원수에 따른 기본재산 공제액 차등반영이 필요함.
  - 예, 1인가구 기본재산 공제: 6,900만원, 4인가구 기본재산 공제: 1억원 등
- 거주지역에 따른 주거용 재산 상한선을 산정하여 그 이상일 경우에만 일반재산에 반영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
  - 예, 광주광역시 주거용재산 상한선 6,900만원/임대보증금이 1억원인 경우, 상한선 초과금액인 3,100만원만 일반재산에 반영

□ 서울 사회복지전문가

- 기본재산액 기준에 있어 주택과 대지 재산을 제외하고, 실제 지역 내 물가수준을 반영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각 지역의 역차별을 없애는 것이 필요
- 각 지방재정의 균등한 발전을 꾀하기 위해선 국가의 역할에 있어 재원분담에 있어서의 개입이 필요

□ 경남 산청군

-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낮은 순서로 공제를 하므로 인해 수급(권)자에게는 불리한 실정임.
- 주거재산의 일부분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라면 주거용 재산 한도액 수준을(농어촌 의료급여 주거용재산 한도액 3800만원) 기본재산액으로 상향조정하여 설정해주는 것이 더 합당

□ 경기 고양시

-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임대 주택 거주자와 민간 전월세 거주자 간의 기본재산액 적용 차등화 필요.
  - 다양한 임대주택 지원이 빈곤가정에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긍정적인 제도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는 그만큼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바로 적용하지 말고 지역의 현황을 반영하여 단계적 적용

□ 기타 사례

- 다수 의견 : 현재의 3급지 기준을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3급지로 구분되어 있는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여 같은 시에서도 읍면동별로 기본공제금액을 달리하는 기준을 만들면 지금보다는 사각지대가 감소
- 주거지 이동에 따른 민원발생과 동일 지역내 서로 다른 주택가격 차이 반영 필요(특히 신도시 내 동지역과 읍면지역 격차)
  -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농어촌으로 이사시 또는 중소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사시 기본재산액, 주거용재산 한도액의 차액 만큼 자연감소분으로 적용하고 재산에 대한 환산액이 발생되더라도 보장유지를 위하여 특례로 3년간 보장

### 3. 기본재산액 상향 조정에 대한 의견

■ (질문) 일부 연구자의 경우 주거용 자산은 환산에서 제외하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는 기본재산액을 현재보다 높게 설정하자는 견해입니다.

- 기본재산액을 높게 설정할 때 기준은 무엇이 적당하고(예, 가구원수별 최저주거기준, 급지별 평균재산액 등),
- 설정한다면 기본재산액을 어느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제시해주시시오.

#### □ 전북 군산시

-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① 생계, 주거, 교육급여 기준과 ② 의료급여 기준을 나눠서 선정하고 있으나 실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사유는 부양의무자 기준 부적합과 소득초과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유가 더 많음.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급지별 평균재산액으로 동일하게 적용했으면 함.
  - 서울특별시(광역시 포함) 등 대도시와 지방 농어촌 지역과는 평균재산액의 차이가 크므로 급지별 평균재산액은 유지함이 타당함.

#### □ 전북 전주시

- 일부 주거용 재산으로 인하여 도움이 절실한 대상자가 수급자격 부적합이거나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이는 예외조항 및 소명자료 등으로 구제하는 방법을 모색해봐야 할 것임

- 주거용 자산을 무조건 환산에서 제외하기 보다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차등하여 자가인 경우에는 일정액의 기본재산액을 환산에서 제외하는 기준 등은 적절하다는 생각

□ 제주 제주시

- 주거용 자산을 환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점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 우려.
  - 제도상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재산이 곧 소득이라는 명제임. 재산을 제외할 경우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어렵고 사회계층간의 차이를 벌리는 결과를 초래
- 기본재산액을 높게 설정한다면 그에 따른 환수제도를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현물에 대해서 환수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주거자산을 소유한 이는 '도시형 주택연금', '농촌형 주택연금'을 의무 가입토록 하고 연금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부분에 한해서 지원한다면 이는 사회적 협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 나아가 국가에서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도 남은 재산을 통해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
- 연금제도와 환수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저소득계층뿐만 아니라 중상층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 서울 광진구

- 주거용 자산을 환산에서 단순 제외할 경우 대상자들의 주거용 재산보유 차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주거용 재산이 기본재산액 이하인 경우와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재산환산액이 동일하다면 타 재산환산액의 비율 등 형평성 문제 발생함

- 주거용 재산에 대하여 환산액을 제외할 경우 모든 재산이 주거용 재산에 국한되거나 타 금융재산이 전무한 경우, 가구특성 등을 고려한 제외가 필요하다고 봄
- 기본재산액 변경시 가구원수별, 가구특성을 고려한 차등 변경이 필요

□ 서울 사회복지전문가

- 필수재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고, 일정금액에 대한 금융재산도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집값 상승에 따른 수급 탈락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봄.
- 수급자의 상황에 있어 수급자의 생활상황을 고려하여 자동차 및 기타 가재도구의 경우도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봄.
- 기본재산액을 설정시 가구원수별 최저주거기준은 존재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평균 재산액에 대한 산정도 필요하다고 봄.
  - 단 필수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주거, 생계용 차량, 건강보험금 등의 재산상황은 기본재산액 산정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충남 서천군

- 주거용 자산을 환산에서 제외하자는 방법도 일리가 있지만 주거용 자산에 대해 지역별, 급지별, 가구원수별, 지역별 최저 주거기준 및 최고 주거기준 적용이 필요함

- 특히 자가 등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현물화를 시켰을 경우를 고려해 적용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욕구가 강한 경우에는 자가 주택에 대해 주택연금을 병행하여 지급하는 것도 한 방법

- 저소득층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저금리 취약계층 전세자금 용자를 주택공사등에서 주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법 적용 필요
- 기본재산은 지역별 차등 필요하며 이를 현물화시켰을 경우, 자산으로 활용 가치등을 고려하고, 현실적인 선정기준 적용 필요

#### □ 경남 의령군

- 기본재산액을 상향한다면 가구원수별 최저주거기준에서 출발하여 공시지가, 물가상승율등 변수를 적용하여 설정함
  - 현 기본재산액에 2배 정도의 상향, 매매 불가 또는 소득으로 환산시 부적합 정도의 제약은 필요
  - 고의적으로 기본재산액만 높게 만들어 놓고 소득환산이 되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소득평가액 등은 적게 또는 타인 명의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기본재산액은 급지별 평균재산재산액을 기준으로 높이고, 농어촌은 5,500만원 정도로 높혀서 현실적인 주거용 자산을 반영

#### □ 전북 임실군

- 가구원수가 많으면 큰 면적의 주거가 필요하고 때에 따라 자녀의 학교 문제로 거주지가 2곳이 될 때도 있음. 기본재산액을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



- 현재 65세 이상이나 중증장애와 질병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로만 구성된 취약계층에게 재산범위 특례가 적용되어 농어촌의  
경우 금융재산이 2900만원 미만인 조건으로 6600만원까지 공제  
가 되고 있는데 다자녀가구(2인이상의 자녀)에 재산범위 특례를  
적용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

□ 경기 사회복지전문가

- 주거용 자산을 환산에서 제외하자는 견해는 조심스럽게 접근
- 첫 번째 이유는 주거용 자산이 국민 자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우 금액도 매우 높기 때문이고,
  - 두 번째 이유는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기본 재산액에 포함되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
- 기본재산액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면, 주거용 자산의 일정 금액 이  
상이 되었을 때 연동하여 환산 산출 할 수 있을 것임
  - 주거용 자산을 환산에서 제외하고 기본재산액을 높게 설정하  
는 경우,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됨

□ 인천 부평구

- 기본재산액은 지역과 가구원수를 기본으로 하고, 소득(급여) 비율  
을 반영해야 함
- 재산이 있어도 수급자가 되는 경우와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비수  
급자 되는 경우가 있음
  - 두 경우가 공평할 수 있도록 자산, 지역, 가구원수, 소득(급여)  
를 반영하고,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기본재산액에 합산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경남 산청군

- 주거용 재산은 일정 수준의 재산가액 미만일 경우 수급자로 인정하는 방식인 컷오프 방식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적정(주거용 재산은 재산의소득환산제 제외)
  -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컷오프 재산기준은 다르게 산정
  - 일정 재산가액 미만이면 면적보다는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방안도 좋음
    - 상속한 주택인 경우 상속전후 10년 이상 거주한 곳이면 면적 등은 상관없이 재산가액 공제를 추가해줌
-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기준의 재산가액 기본조건 금액의 상향조정 필요
  - 수급(권)자의 재산범위 특례(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p169)중 1)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상속된 주택인 경우에는 재산가액을 추가 공제하여 주는 방안도 필요함.
    - 예) 부부 가구로 보장받다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기준으로 인하여 제외될 수 있음.
  - 재산가액만 상승한 가구(p171) 지침 변경 필요
    - 지침에 의하면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만 재산범위 특례가 가능하나, 실제로 금융 등으로 인하여 얼마간의 변경이 있을 가능성이 많음.
    - 지침을 세부화 필요함. 즉 재산가액 상승 뿐 만 아니라 타 재산의 경우 일정금액(예, 3백만원)이하인 경우에도 재산범위 특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가 삽입

- 수급자가 지원받고 있는 생계비 혹은 기초연금액을 모두 소비하지 않고 조금씩 모아놓아, 100만원 정도일지라도 상향된 예금으로 조회되면 이는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p171)”에 포함되지 않아 재산범위 특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다수 있음.
-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p171) 단, 예금이 300만원 이하인(추정) 경우에는 제외”라는 조항을 넣어 금융재산이 다소 증가하여도 보장하여 주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함

□ 충남 서천군

- 주거용 재산을 환산 제외하기에는 역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구원수별·급지별 기본재산액 상승 필요
- 차상위계층 수준의 재산액 적용 또는 주거용 재산의 환산율을 낮추는 방식

□ 기타 의견

-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공제금액을 산정하면 실거주용 재산으로 미선정 되시는 사각지대 분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을 없애고, 최대 상한 기준을 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최대 상한기준은 1억이하, 2억 이하 등

#### 4. 자동차 환산율(100%) 적용에 대한 의견

■ (질문)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생업용과 장애인용 이동차량, 일반재산 환산률 적용 차량을 제외하고, 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과거 사치재라 인식되던 자동차는 국민정서상 환산율을 낮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자동차가 필수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현행 자동차의 환산율 100%가 과도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 자동차가 필수재에 해당된다고 보시는지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산율 100% 적용 자동차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 사례를 들어 기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평소 생각하셨던 자동차 환산율 적용의 대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환산율 인하, 연식과 배기량 기준 완화, 전기차 등 배기량과 무관한 자동차에 대한 가액 기준 설정 방법 등).

#### □ 전북 군산시

○ 자동차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재에 해당함.

- 압류 등이 심하여 자동차 멸실도 안되는 차량이나 대포 차량으로 실제 소유하지 않는 차량이 명의만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어 실제 수급권에 들어오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도 발생함.

○ 의견 : 자동차 재산 중에 1대에 대하여 연식과 배기량 기준을 완화하거나 100%환산률 적용을 개별급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줄 필요가 있음.

- 현재 주거, 교육급여는 많이 완화가 되어있으나 생계, 의료는 예전과 동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자동차 기준을 동일 적용할 필요 있음

□ 전북 전주시

- 현재 100프로 소득으로 환산되는 자동차 기준은 매우 엄격하며 완화되어야 하는 측면에서는 찬성하는 입장
- 자동차기준이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사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무척 관대한 기준으로 적용
  -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 승차정원11인승~15인승 이하 승합차, 장애정도가 심한 수급자 본인의 직접 이동수단이 되는 2,500cc 미만 자동차로 정하고 있어 일반인과 확연하게 다른 기준을 적용
- 사례
  - 자녀가 넷이고 무직인 아내, 세대주 남편은 배달일을 하며 월 수입 200만원 정도로 살아가는 저소득 세대
  - 월세로 거주하는 아파트와 2,000cc 넘는 6년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어서 정부의 복지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
  - 자동차 기준이 적용되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을 설명하였으나 절대 자동차를 포기할 수 없는 대상자의 입장
- 〈자동차환산율 적용 대안〉 : 모든 자동차는 재산으로 산정
  - 장애인자동차 기준 유지(재산기준을 0으로 하는 자동차는 없었으면)
  - 생계유지 자동차 기준(생계유지를 위한 증빙자료의 어려움)
    - 생계, 의료수급자(배기량2,000cc+9년이상 또는 차량가액 300만원 변경)
    - 주거, 교육수급자(배기량2,000cc+7년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변경)

□ 서울 광진구

○ 환산율 100% 적용 자동차 기준은 유지가 적절

- 과태료미납에 따른 압류로 처분하지 못하는 차량이더라도 차량이 오래된 경우 차량등록말소 및 폐차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2개월이내 처분예정차량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환산율 100% 적용은 그대로 유지가 적절
- 생업용 적용을 받은 차량의 경우 차량을 이용해 발생하는 소득 기준이 모호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으며,
- 자활사업 미참여하도록 최저임금수준에도 못미치는 월60만원으로 신고하는 등 생업용 차량 적용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생업용 적용 차량의 경우 강화방안 제시가 필요함

□ 충남 서천군

○ 수급자 책정과 관련해서 차량에 대해선 국민들 인식되어져 있음

- 자동차 소유시 수급에서 제외됨과 생업용 인정. 간혹 타인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가끔 있음
- 수급신청 이전에 차량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하고 신청하는 경우 있음

○ 자동차 환산율은 현행 연식과 배기량 기준 적정하나, 대중교통이 발달된 대도시 농촌지역 차별 적용도 필요함

□ 광주 광산구

○ 차상위 차량기준은 2,000cc미만/10년 이상 차량 또는 500만원 미만 차량으로 제한되어 있음.

- 일용근로를 하는 분들은 2,000cc이상 차량을 소유한 경우가 많음. 또한 엔진 다운사이징으로 배기량에 따른 차량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있음.

○ 배기량 기준을 좀 더 완화하고 대신 차량가액 기준 적용 필요.

- 예, 2500cc 미만 차량가액 1,000만원 미만 차량 등

□ 전북 장수군

- 전체 자동차에 대해 환산율 100% 적용이 아니라 사용 용도 및 2000cc 초과 승용차와 cc가 없는 전기차의 경우 구입 비용을 조사하여 평균 상한선을 정해서 기준점이 넘어가면 100% 적용하고, 기준점 이하는 차등 적용하였으면 함.

□ 전북 임실군

- 주거급여의 차량기준은 2000년까지는 배기량 1600cc미만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200만원 미만이었으나 2022년 현재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5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
- 다만 가구원수가 5인이든 1인이든 가구당 생업용 재산을 1대로 인정해주고 있어 질병으로 인한 차량소유가 불가피한 경우나
  - 자녀의 학교나 교육을 위해 이동을 돕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가구에 대해 2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심의를 통해 일반 재산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

□ 경남 산청군

- 자동차 환산율이 100%인 것만으로 복지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세대 다수 있음.

- 차량만으로 인해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 차량만으로 인해 소득, 재산사항이 전혀 없는 귀촌한 수급권자가 차상위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 있었음.

○ 자동차 기준은 좀 더 완화하고 지침을 심플하게 정비해야 함.

- 수급권자는 물론 담당공무원도 복잡하여 차량기준에 대하여 안내하는 것이 어려움.
- 환산율 100%에서 80%, 60% 정도씩 점차 완화하고, 감면 혹은 면제 차량 및 일반재산 기준 확대가 필요함.
- 차량의 경우 점차 필수재로 인식되고 있어, 컷 오프제(예, 배기량 2500cc이하 혹은 가액 3천만원 이하일 것 등)를 적용하되, 환산율은 대폭 낮게 적용하는 방안 필요(보험료, 세금, 운행비 등 차량에 소요되는 비용정도 만큼만 환산율로 적용)

#### □ 경기 고양시

- 환산율 적용 대안 : 주거용 재산 한도액과 같은 자동차 재산 한도액 적용
- 주택과 다른 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 규모별 공제액차이를 두지 않고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생산년도 7년 전, 차량배기량 2000cc 차량 중고차량가액의 상위 30%, 하위 30%를 제외한 가격의 평균가격을 자동차 재산 한도액으로 적용하여 주거용 재산 한도액과 같이 적용

#### □ 세종시

-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으로 분류가 될 수 없고 해당 차량을 어떻게 분류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는 고민 필요



- 또한 10년 이상의 DPF가 장착되지 않은 경유차의 경우 규제를 하고 있어서 해당하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환산율을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음.
-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배기량 별로 차등해서 비율을 조정하고 전기차는 일정 부분 차량 가액을 공제하고 비율을 정하는 부분으로 이후에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가격이 내려가면 친환경차 구매가 권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 기타 제안

- 자동차를 필수재로 인식하고 환산율이나 배기량 기준 대폭 인하  
- 2000cc 이하 중고 자동차(가액 3,0000이하)로 완화 필요
- 경차에 대해서 환산율 적용을 다르게 적용. 현재 경차도 연식이 10년 이상을 일반재산으로 적용하나 경차에 한해서 5년 이상으로 일반재산 적용이 바람직할것으로 판단
-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 이외의 적용기준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현재 자동차 환산율을 적용한 배경과 자동차의 기초적인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함.

## 5. 재산의 컷오프 방식 도입에 대한 의견

■ (질문) 대통령 공약에서는 재산의 컷오프 방식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였으나 국정과제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의견을 간단히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전북 전주시

- 재산컷오프제를 도입함으로 인하여 그 상한선을 얼마로 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값을 측정할 수 없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며,
  - 근로무능력 가구 추가 지급과 근로사업소득공제율 확대 등도 모두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임.

### □ 서울 광진구

- 기본재산액 한도액 범위에서는 주거용 재산과 금융재산의 적용이 동일하나 금융재산은 현금화 할 수 있으므로 구분은 필요
- 재산의 컷오프 기준은 금융자산으로 가구원특성을 고려하여 검토 필요

### □ 충남 서천군

- 주택 및 재산 가격상승으로 공시지가와 현실 거래가격 차등, 주택 재산을 현물화시킬 경우를 고려해서 일부 재산의 컷오프 방식 도입 필요
  - 지역별로 일정수준의 재산 미만에게만 제도권 흡수 필요. 재산 소유자가 의도적 채무로 인해 부정수급 가능성 있음
  - 재산에 대한 공시지가도 중요하지만 실제 거래가격 적용 필요

○ 사례

- 사례1) 수급자중 금융재산(보험등 포함)이 8천만원 소유하고 있으나 해태업(김양식) 사업으로 3억 이상의 채무 소유중, 실제 해태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사통망에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직장인 아닌 사업이나 농어업의 소득은 사통망에 현실적 적용안됨
- 사례2) 부양의무자인 모친이 멸치배 등 어선을 3개 소유하고 있으나 사통망에 재산으로 15백만원정도 재산 적용
  - 실제 어선취득시 물적인 배와 허가권을 포함한 배의 경우 20억~40억 거래선. 이는 재산이 허가권을 포함하지 않고 현물만 공지가가로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금액하고는 거리감 멈

□ 서울 사회복지전문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 역할은 현재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것
  - 실제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단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재산의 컷오프방식 도입에 있어서는 선정에 있어서 현재의 방식보다 소득지원에 있어서 빈곤계층의 확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재산 컷오프 방식 기준에 근접하게 벗어난 이용자에 대해서는 제도권 내에 들어올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에 관련된 부분의 대안은 더 심도있게 논의해 봐야할 것 같음

□ 전북 장수군

- 재산의 소득환산 제도를 컷오프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할 것이며 현 상황에서는 의견을 제시하기가 난해함.
- 소득환산율이 없다면 많은 복지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생계급여는 대상자 확대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주어졌으면 함.

□ 경남 의령군

- 코로나 시대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상황에서의 탄력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행복추구권 차원에서 적용가능하나 복지제도에서의 일괄적인 재산의 컷오프 또는 소득평가액의 일괄적용은 맞춤형복지를 추구하는 적절치 않음

□ 전북 임실군

- 재산 환산액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지 않을 경우 일반재산이 많은데도 소득을 확인할 길이 없어 수급자로 선정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현재 기본재산액이 낮아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취약계층(65세 이상이나 중증장애와 질병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로만 구성된 가구)에게만 적용하는 재산범위 특례를 점차 확대하는 방법은 긍정적으로 생각
- 단순히 재산가액의 증가로 탈락되거나 가구원수가 많아 일반재산이 증가되어 탈락하는 경우, 부모의 부재나 취업 준비 중인 청년 등 재산범위 특례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경기 사회복지전문가

- 재산이 아닌 '수입'에 대한 컷오프에 동의하며, 우리나라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수입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라고 판단

□ 인천 부평구

- 재산은 매매시 소득(현금)임.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재산을 제외하는 것은,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분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
- 재산을 소득활동과 동일시 해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사용할 거라 생각

□ 기타 의견

- 주택가격 상승과 과도한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으로 수급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소득인정액 제도의 점차적 조정으로 궁극적으로는 재산의 컷오프 방식도입이 필요하리라 생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रो에 놓여있다고 생각하며,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법을 활용한 기초생활보장, 노인 이하는 기초생활보장법을 활용한 기초생활보장 등이 필요

## 6. 새로운 형태의 금융자산에 따른 수급자격 기준에 대한 의견

- (질문) 비트코인 등 새로운 형태 금융자산이 증가 추세인 반면, 금융당국에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관련한 부채기준은 한도가 없어서 수급자격 부여의 적정성에 대한 점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
  - 현재의 금융자산 및 부채기준이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적절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새로운 형태의 금융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경험하신 경우, 사례를 들어서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제주 제주시

- 보험사고로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었음. 보상금액이 책정되고 행복e음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소득반영을 함
- 그런데 보상금을 제3자 통장으로 받아 개인간 부채를 해소했다고 주장했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자 어찌든 돈은 자신에게 없으니 생계비 공제라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음
  - 타인의 통장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이체한 경우 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생계비 공제를 통해 몇 개월 후 다시 수급자가 됨
- 보상금인 경우 수급자인 경우 국가에서 확인을 거쳐 지급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

### □ 서울 광진구

- 주식 등의 금융자산은 연2회 공적자료 회신사항을 추가로 늘려 최대한 현재 시세와 가깝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대전 동구

- 금융재산 기본액 500만원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최소 천만원이상)
- 현재 보험 등의 금융재산은 적용제외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자립을 위한 적금 등은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탈수급을 위해 다양한 고민이 요구됨

□ 충남 서천군

- 비트코인 등은 본인 소유 현금으로 거래되는 금융재산 성격의 자산임으로 당연히 적용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재산의 컷오프 방식이 적용되어야 할 부분임. 부채에 대한 책임감도 중요함으로 부채 상한제 필요함
  - 금융재산, 현물 부동산, 동산, 부채에 대한 상한 기준 적용 필요함
- 사례 : 요즘은 농어촌에 가업을 잇기 위해 젊은 자녀들이 귀촌 귀여하는 경우 많음
  - 부친의 농지로 인해 농업 직불금만 1년에 억대 소득이 있으며,
  - 부친소유농지를 활용해 한우사육(100~500두)로 인해 1년에 200두를 판매하는 경우 거래가 마리당 천만원 20여억 거래됨
  - 이는 제도권의 수급자는 아니지만 농어촌에서의 고소득자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농어촌 소득은 사통망이나 세무관련에서 나타날 수 없는 소득으로 추정됨으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 비트코인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재산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식 등은 적용되고 있고, 당연히 코인도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함. 또한 그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새로운 형태의 암호화폐 등을 파악하여 금융재산에 포함해야 함

□ 세종시

- 가상자산인 코인은 최근에 이슈가 된 금융재산인 만큼 그 규모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각이 걸릴 것이라 판단
- 수급자격 여부에 반영하는 것도 충분히 논의를 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판단

□ 경남 의령군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금융자산으로 인정되고 복지급여 신청시 부채로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 도덕적 해이 방지해야함
- 금융자산중 보험업법 따른 보험상품,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도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도 금융자산 합산에 포함되어 있음
  - 보험상품중 질병치료, 화재 등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험금은 금융자산에 포함 제외 의견제출
- 금융재산 환산율 6.26%반영이 타당한 것인지 논의 필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도 기초연금처럼 4% 의견제시

□ 전북 임실군

- 현재 수급자는 최근 6개월 입출금의 평균이 금융재산으로 반영되



는데 비트코인의 구입을 위해 통장에 입출금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확인이 될 것으로 판단

- 기존 수급자의 경우보다는 신규 수급자 신청 시 고의로 일반재산을 처분하고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부정수급자를 막기 위해 코인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재산을 조회할 필요가 있음

- 정부에서는 코인 소유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금융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정부의 제도 개선이 먼저 선행될 경우 코인에 대해 금융재산 적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

□ 서울 사회복지전문가

- 금융재산 및 부채기준이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
- 수급자격 여부 판단에 있어 부채는 많으나, 현재의 주거재산 및 생계형 자동차의 유무 등에 의해 수급권자 자격 탈락을 경험한 사례를 종종 봐오고 있고, 부채기준에 대한 정확한 한도 및 적용이 되고 있지 않아 재산환산액 산정에 있어서도 반쪽짜리 환산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

□ 경남 산청군

- 금융재산 기준 중 보장성 보험의 경우는 금융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환산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여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사례, A씨는 의료급여가 필요한 수급권자이나 그동안 납부한 질병, 상해 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납입금액이 과다하여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세대주인 A씨는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고(의식은 있으나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함, 노인성질환이 아니어서 복지시설 입소도 안됨) 배우자인 아내 B씨는 남편 뒷바라지와 생계를 위해 상시근로 중임(딸기 작목반 경리업무) 자녀 2명은 대학생임.
- 요양병원비가 과다 소요되어 혼자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 이웃에 거주하는 언니부부가 금전적인 지원을 가끔 해줬음. 그러나 최근 몇 년동안 지속적으로 부채를 내어 병원비 지출을 하고 있어 언니부부도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고 함.
- 이 가구의 경우 향후의 안정된 삶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현재 남편인 A씨가 몇 년을 더 살지 알 수 없는데, 보험을 해약하지는 못한다고 함.
-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질병으로 인한 급격한 생활고를 겪지 않기 위해 10여년 전에 보장성보험을 다수 가입해 놓은 상태임. 그러나 현재는 보험혜택을 받을 사건·사고가 없어 누적된 보험금 만 늘어가고 있어 기초생활수급권 진입도 하지 못하고 있음

○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고 일반재산 기준(4.17%)으로 적용하거나, 혹은 일정기간 이상 가입된 보험 상품인 경우(10년 이상 등) 기본공제액을 설정하여 미래에 안정된 삶의 희망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함

□ 충남 사회복지 전문가

○ 새로운 형태의 금융재산(이하, 비트코인 등)은 현행 금융재산으로 편입될 수 없는 바, 금융재산이라는 용어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용

어로 지칭할 필요가 없으며, 수급자격부여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여지도 없음.

- 향후, 새로운 형태의 금융재산이 실체화되었을 때 복지차원에서 검토할 대상이 될 수 있음.

□ 경기 고양시

- 제도의 필요성과 더불어 운영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가상화폐투자자의 경우 기초생계가 해결되어 투자할 여유가 있거나, 기초생계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생계가 아닌 불확실한 투자를 위해 소진 되므로 지원의 목적이 이루어 질 수 없음
  - 기초생계가 아닌 중위소득을 반영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이라 하더라도 제도의 취지와 가상화폐에 투자한 피지원자의 지원금 활용은 동일한 양태이므로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는 지원금을 계속하여 지원할 이유가 없음

□ 세종시

- 최근 비트코인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재산의 경우 금융당국에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며 이는 대체로 젊은 층에서부터 빠르게 악용될 수 있음
  -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며 해당 금융재산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한다면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
- 최근에 코인뿐만 아니라 NFT, 음원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TV에서도 광고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만큼 점차 다양해

지는 가상화폐, 금융재산 등을 시대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선 기준  
보다는 근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기타 의견

-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와 투자가 증가 중. 따라서 현재의 금융재산  
및 부채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가상자산은 규모가 크게 금융재산의 성격이 높음. 금융재산으로  
적용하되 이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여기서 파악하도록 하며, 지속적 논의가 필요
- 가상화폐는 본인이 세금신고를 한다거나 매도를 한다거나 해야  
확인이 되는 경우인 데, 빚을 지면서까지 가상화폐를 보유하면서  
한도가 없는 부채를 적용해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부적정(부채의 용도 파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

## 7. 청년층에 대한 금융재산 환산율 적용 문제 사례

- (질문) 청년층(29세 이하)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산 대비 부채비율  
이 높으며(29.0%), 전체 주택관련대출 증가액 중 청년층이 차지하  
는 비율도 '19년 대비 크게 상승(53.4%)하고 있습니다('20년 기준).
- 청년층 수급자와 관련하여 금융재산의 환산율 적용과 관련한 문  
제를 경험하신 바가 있다면 사례와 함께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북 전주시

- 청년수급자의 경우 소득 활동을 할 시기이기 때문에 재산의 환산  
액이 있을 경우 보장에 영향이 크다 할 수 있음

- 주거 마련을 위한 저축이라던가 빈곤 가구의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 등은 재산가액에서 제외가 필요함

○ 청년층의 수급탈피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불안한 취업보다는 안정적이고 장기적 일자리 지원과 관련한 직업교육과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함

□ 서울 광진구

○ 청년층의 주택관련대출이 증가하더라도 재산에서 공제가 되고 있으며, 대상자별, 연령별 금융자산의 환산율을 고려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

- 금융자산 중 재산의 환산될 자산이 많다면 주택관련 대출 대신 기존 보유중인 금융자산을 이용할 수 있음

□ 인천 지역자활협회

○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가용재산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부채비율(대출)도 그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음

○ 청년층 수급자는 금융재산 환산율 적용시 가상화폐까지 적용하는 것이 제 견해로 형평성이 있다고 판단

□ 충남 서천군

○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한 채무 변제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부양의무자에게만 적용되고 수급자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주택관련 대출금액이 클 경우 기준을 정해 대출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필요

□ 광주 광산구

-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재산 공제가 아닌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경남 의령군

- 대도시 특히 대학가 주변, 직장 인근 등 주택가액 및 전월세가 높은 지역에 LH공사 전세 대출등이 대다수 부채로 보임
  - 청년층 수급자 부채 및 주택부채는 1인가구가 감당하기에는 높은편이므로 5년 또는 장기로 적용 제외 특례 제외

□ 전북 임실군

- 실업률이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매매할 수 없을 만큼 상승하는 현실에서 부모의 부채나 건강상의 이유로 기본재산액보다는 높은 재산기준으로 복지를 지원해야 할 경우가 있음
- 취약계층(65세 이상이나 중증장애와 질병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로만 구성된 가구)에게만 적용하는 재산범위 특례를 점차 확대하고 일선에서 지역사회보장심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

□ 인천 부평구

- 청년의 경우 부채비율이 높고 금융자산이 적지만, 고가 핸드폰과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 재산조사에서 자동차를 국민 정서를 반영하여 적용하는 것처럼, 새로운 측정기준을(핸드폰 요금 등) 추가하는 것도 필요

- 부채를 사용한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환산하여 적용하는 기준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 예를 들어 부채를 통해 병원비, 주택 구매, 차량 구매 등에 따라 환산율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판단

□ 서울 현장전문가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제적 지원도 확대되는 중. 대표적으로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자립수당 등이 있음
  - 월 12만원 정도의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생계급여 대상자로 수급대상자가 되기 어려울 수 있음. 그러므로 디딤씨앗 통장에 대한 금융자산적용을 예외로 적용 필요

□ 세종시

- 청년의 대출에 대한 부분을 국가제도로 시행해서 손실에 대한 부분을 보전해줄 순 없겠지만 대출이자에 대한 부분의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

□ 추가 의견

- 청년층 수급자에 대하여 정확히 금융관련 실태파악 조사 후 논의와 대안이 필요







## 제3장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빈곤층 대상 취업지원서비스와 관련 제도와의 관계

제1절 모니터링 개요

제2절 모니터링 결과



# 제 3 장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빈곤층 대상 취업지원서비스와 관련 제도와의 관계

### 제1절 모니터링 개요

#### 1. 사업의 개요

##### □ 제도 개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기초하에 2021년 처음 도입됨
- 동 제도는 취업희망자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춘 구직자의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받게 됨

##### □ 운영 목표

- 저소득층 소득지원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사업에 참여하는
  -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함

- 부양가족 지원금은 2023년에 도입된 것으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이외에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통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목표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지원제도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직활동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미이행시 수당 지급이 제한
- 취업활동계획의 미수립, 구직활동 의무를 미이행 시,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지원 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구분되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 구체적인 지원조건과 대상별 지원급여는 <표 3-1>을 참조

〈표 3-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지원급여

I 유형	II 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b>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b> 이하이면서, <b>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b> 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sup>1)</sup>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sup>2)</sup>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직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

주: 1)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공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애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제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SporTrgt.do>)

〈표 3-2〉 국민취업지원제도 I, II 유형 비교

구분	I 유형			II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비경활)			
지원대상	나이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비용	×			

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SporTrgt.do>)

○ 사후 관리

-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되며, 희망시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 취업지원 기간 종료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 참여자와 일부 사업과 대상이 중복되고 있음

○ 자활사업 참여자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중복 참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음

- 조건부 수급자중 자활역량평가 80점 이상자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와 같이 수급조건 이행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II로 연계됨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과 자활근로 참여시 중복수급이 되지 않으며, 자활근로 참여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 재신청이 불가능함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참여자의 경우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로서 자활역량 평가 80점 이상자는 취업지원서비스 계속 수급은 가능, 별도 자활근로 참여는 어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II참여를 조건이행으로 처리
- 그 외 자활근로 참여시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이 중지됨

## 2. 모니터링 내용 및 진행 방식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빈곤층 대상 취업지원서비스와 관련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2차 포럼
  - 근로연령 및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 소득보장 연계프로그램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 서비스에 대해 5가지 설문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
  
- 모니터링 요원 설문 내용
  - 질문 1) 2021년 새롭게 시작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문으로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봄
    - 저소득층 입장에서 듣는 평가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기관 입장에서 듣는 평가
  - 질문 2)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이후 취업지원서비스의 질과 성과에 대한 질의
  - 질문 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희망자 등에 대한 확인
    - 수급층이 신청을 하려고 한 경우 그 이유와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구직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에 가려고 하는가
  - 질문 4) 세대분리에 대한 견해, 실제 사례에 대한 질문
  - 질문 5)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시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 제한 중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한 설문

## 제2절 모니터링 결과

### 1. 제도에 대한 평가

- (질문) 현재 지역에서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대체적 평가가 어떠한지 말씀해주시요.
  - 저소득층 입장에서 듣는 평가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기관 입장에서 듣는 평가

### 가. 저소득층의 입장

#### □ 서울 광진구

-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건강, 나이, 취업경험 등을 고려한 자활역량 평가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서비스를 받거나 지역자활센터를 이용
  - 취업지원서비스를 선호시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다는 장점
  - 자활역량평가가 80점 이상이지만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부담스러워 하기도 함

#### □ 제주 제주시

- 2021년에 도입된 제도로 아직 인지도가 낮음. 또한 지원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명확치 않아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는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음

#### □ 충남 서천군

- 취업준비를 위해 정보제공, 교육기회, 취업준비를 위해 막연함이 아닌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준비단계로 만족감 높음. 구직촉진수당등에 대한 만족도 높음.



- 다만, 시골이고 청년계층이 적어 도시의 대학 재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식과 지식이 낮음

□ 광주 광산구

- 1유형은 차상위계층 이하가 대상으로, 3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평가가 긍정적
- 2유형은 생계급여를 수급 받는 조건부수급자들이 자활근로참여를 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반면 생계급여 수급으로 인해 추가 지원금을 주지 않는 특성 때문에 평가가 좋지 않음.
  -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비 등이 지원되면서 저소득층이 많이 신청

□ 경남 의령군

- 구직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며,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하기를 원함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연령 등 유형 I, II를 떠나, 기준 확대 필요. 경계선에 있는 대상자 있음.
  - 예) 연령은 +3 초과하나 소득, 재산기준, 취업경력 등 다른 것이 충족되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북 울진군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하는 기관이 적은 상황. 전국 754개의 기관 중 경상북도 지역에는 50개의 기관만 실시
  - 경상북도의 경우 10개의 군 단위 농어촌지역에서는 실시기관

이 없으며, 실시기관과의 거리도 접근성이 어려움(120km로 2시간 반 소요). 교통비 등으로 수당이 다 지출됨

○ 두 번째로 전달체계가 제도로 갖추어지지 않음. 저소득층을 먼저 접하는 곳은 주민센터 복지부서 또는 자격조사를 실시하는 통합 조사부서임

- 시군별로 일자리 팀에서 신청자 외 발굴을 하기에 현실적 어려움. 저소득층 담당부서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하기에 용이한 상황.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소통하는 활동이 필요

□ 서울 사회복지전문가

○ 자립준비청년 입장에서 저소득층 입장에서 보면,

- 매년 2500여명의 청년이 자립을 준비하지만 스스로 취업이나 경제적 문제 등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많지 않음
- 특히 경계선 청년들이 많다 보니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고 시설 자립지원요원이나, 자립전담기관이 돕지만 의지미약, 이해력 부족, 정보처리 부족 등으로 동 제도를 활용하는데 한계
- 시설이나 자립전담기관 등 위탁기관을 통해 국취 제도를 전달 받지만 서비스나 정보 전달의 편차 발생 중
- 한번 거절한 서비스는 재이용이 어렵기에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어려움. 한번 직장적응이 어려워 취업지원을 거절하였을때는 페널티로 이용이 어렵기에 자립청년들에게 좀 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충남 서천군

- 저소득층 즉 참여자들은 대부분 긍정적. 취업성공패기지 보다 체계적 서비스와 지원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
- 취업부문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어려워하고 있음. 단, 농촌지역 특성상 귀농층은 취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현상 있음

□ 기타 의견

- 생계비 및 수급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함. 아직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진입 가능한 근로능력(80점 이상)을 가진 경우 91만원 정도의 소득신고를 하면 일반수급자로 분류되어 자활센터등에 자활근로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됨.
  - 91만원의 소득신고를 하고 지역의 농업관련 일용소득자 등 자유롭게 일을 하는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국세청 미신고) 굳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농촌지역의 경우 청년은 적고, 고령층과 장애인 등이 있어 동 제도와 연계는 미흡
- 관련 업무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일자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복지 부문에서는 사업내용을 충분히 인지 못하고 있음

**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입장**

□ 제주 제주시

-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저소득층의 참여가 높지 않고, 기관입장에서 홍보를 필요로 함

□ 충남 서천군

- 농어촌지역은 농어촌 관련 업종 겸용이나 일자리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구직(취업)은 도시보다 낮음
  - 농어촌에 중소기업 공장은 있으나 단순노무보다는 사무직 및 관리직을 선호하여 일자리 연계가 어려움
  - 직업훈련 등은 인근 도시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다수. 중소기업 공장들은 대부분 구인난이 있어 연중 구인 중

□ 광주 광산구

- 조건이행을 위해 자활사업 보다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대상자들은 아무래도 의욕이 떨어지다 보니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경북 안동시

-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연령상한이 69세인데 65세 이하로 연령상한을 줄이는게 필요
  - 복지서비스에서 65세 이상을 근로무능력자로 대우하는데 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모순
- 공공일자리 참여자 제한 필요.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 자활근로 참여자들은 제한을 하는 것이 취업지원서비스의 취지에도 부합

□ 기타 의견

- 생계비 및 수급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함
  - 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I 유형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지만, II 유형은 참여도가 저조

-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을 받으며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수당(비용)의 수급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 훈련기간을 이용하거나, 훈련기간 후엔 다시 자활근로 진입 및 수급을 재신청

##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성과 평가

-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의 질과 성과가 좋아졌다고 판단하십니까?
  - 예를 들어, 수급대상자인데 취업지원제도 참여에 따라 구직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어떤 경우인지?

### □ 서울 광진구

- 수급대상자로 취업지원 참여를 통해 구직에 성공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취업이 되도 단기취업종료로 취업으로 보기 힘들.
  -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는 단기취업종료, 기간만료종결 또는 미취업종결로 서비스가 종료됨
  - 원인으로서는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 의지 부족과, 센터에서 진행되는 취업 동기부여도 불충분함.
  - 조건부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대한 열망보다는 수급유지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 중

### □ 충남 서천군

- 대졸 취준생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면접, 자기소개서 등을 지원받은 경우가 있으며, 만족도가 높았으며,

- 위탁기관의 친절과 취업 지원서비스를 받음으로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를 확인
  - 취업이후에도 일부 관리가 되고 있으며 사후관리와 사후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 혼자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보다 안정되고 지도를 받아서 만족도가 높았음
- 최근 수급자는 아닌데 취약계층 가구의 대학졸업이후 미취업상태에서 자격증 공부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취준생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신청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족감이 높았음

□ 광주 광산구

- 대학을 막 졸업하거나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참여자 중 취업으로 성공함.
- 조건부수급자 평가와는 무관하게 자격증 취득 등으로 인한 취업은 상당히 잘 이루어지는 편임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입장도 취업 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는 것이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자활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가 되고 있음.
- 수급자의 경우 연령에 따라 자격증 취득 부분이 좀 달라짐.
- 청년층은 트렌드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하는 편임. 제과제빵기능사나 바리스타 같은 자격증을 선호. 다만, 사회경험이 적어 일을 시작했다가 취업의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중년층은 돈을 바로 벌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함. 따라서 요양보

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처럼 따는 데 소모되는 에너지는 상당하더라도 장기간 취업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함.

- 중년층은 빛이나 오랜 생계급여 수급으로 인해 고착화된 조건부수급자들이 많아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의무적으로 잠시 거쳐야 하는 과정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 □ 경북 울진군

-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았을 때 가까이에서 내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과 원거리를 이동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예로 포항고용센터에서 주1회 방문 출장소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대부분 업무가 실업급여, 고용보험 업무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흔 잡하여 상담을 하거나 애로사항을 전달하기에 매우 어려운 실정
  - 국취제도가 스스로 취업 활동을 하기 어려운 계층에 도움이 되 고자 하면 서비스 제공의 기회를 골고루 받을 수 있어야 함
  - 대안으로 소도시지역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고용센터, 근로 복지공단 등 4개 기관이 건물을 함께 사용하면서 통합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도 좋음

#### □ 인천 부평구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에게 물질적인(경제지원, 구직 알선 등)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을 해야하는 이유, 진로와 적성 파악, 취업 의지 등을 높이기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

□ 서울 사회복지전문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청년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가 좋아지고 있으며 성과도 훌륭해 보임.
- 하지만 조금은 부족하고 취업 준비가 덜된 자립준비 청년에게는 이 제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보부족, 이해부족, 필요한 서류 미구비 등으로 중도 포기가 많다고 알고 있음.

□ 경기 고양시

- 구직촉진수당은 1인가구의 경우 생계에 적지않은 도움이 됨. 이를 통한 어느 정도의 생계의 안정이 취업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됨.
- 취업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되고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등으로 인해 취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에 다소 도움이 됨. 단 기초수급자중 구직에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음.

□ 기타 의견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성과를 보여주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동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정상적인, 지속가능한, 안정되고, 만족도가 높은, 기초가 되는 프로그램(취업과 직접 연계되는 또는 자격증과 연계되는)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



###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희망 사례

■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 분들이 어떤 이유로 그런 선택을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현장에서 II유형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한 분, 또는 하려던 분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였는지 사례를 통해 말씀해주십시오.
- 이런 분들이 자활일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구직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서울 광진구

-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일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구직급여를 지원받지 않는)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 첫째,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 선호하는 자격증으로는 요양보호사, 조경관리사, 증장비관련 자격증임. 일시적인 취업보다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안정적인 취업을 원함
  - 둘째 지역자활센터는 3회까지 이용이 제한되어 있어 3회 종료 이후 수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 □ 인천 사회복지전문가

- 지역자활센터는 조건부수급자가 위탁, 자활근로를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지되는 것을 위탁이 온 후에 알게 되면서, 자활근로 참여가 어려움
  - 예를 들어 사업단에 적응이 안되거나, 근로 자체가 안 맞거나 (사무직, 전문직) 기존참여자들과 소통이 어렵다고 한 경우 계

이트웨이 과정중에서 경로설정을 변경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다시 넘어가는 경우가 10%정도는 됨

- 수급을 유지하고 생계급여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취업지원제도로 교육 및 자격증을 취득해도 취업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자활센터에 재위탁으로 오는 경우가 많음

□ 충남 서천군

○ 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이유는 근로능력이 미약한 경우 일자리에 종사하면서 수급자 유지와 경미한 근로에 만족한 수급자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 이외 수급자 유지를 희망하고 있으나 자활참여는 원하지 않는 일부 조건부 수급자들이 촉진수당을 안받아도 생계비 지원이 보충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 조건부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에 참여해도 수급자로 유지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충남 금산군

○ 자활근로 참여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므로 불규칙적인 생활을 만성적으로 하던 분들이 거부감이 들어 자활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을수도 있다고 봄

○ 자활참여로 소득 발생시 소득인정액 계산 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 수급 급여가 감소하거나 중지될 가능성이 있어 급여 중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 대신 국민취업제도를 참여 하여 II 유형의 취업활동비용을 받게 되면 규칙적인 생활하지 않고 급여에 영향도 받지 않아 적

은 금액일지라도 추가 급여가 발생하니 자활근로 대신 국민취업제도 참여 사례가 있거나 악용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음

□ 광주 광산구

- 국취2 참여는 조건이행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1인 생계비가 지원되기에 조건부 자활참여를 피하기 위해 국취2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보임.
- 본인이 목표가 뚜렷한 대상자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함.
  -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조건이행 대상자가 미용기술을 배우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등
-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감액을 면하기 위해 조건 이행을 위한 타발적인 참여가 많음

□ 강원 홍천군

- 자활일자리는 관리자가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참여한 수급자들은 규칙을 지키며 근로를 해야함.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까운 관리자가 없고, 수급자 본인의 운신의 폭이 넓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간활용을 할 수 있음.
- 중요한건 자활일자리에 참여하지 않아도, 수급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다양한 복지대상자의 테두리에서 수급자격을 누리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

□ 경북 올진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조건을 부과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자는 조건제시유예 또는 조건부가유예를 선호하고 가급적이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음. 같은 맥락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판단
- 자활사업에 참여할 경우 최저인건비보다 적은 인건비를 수령하는 점, 일반시장에 참여가 어려운 대상자들이 모여서 근로활동을 한다는 조직의 소속에 대한 점,
  - 더불어 근로활동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나태함 등으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조건부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방안 중 하나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선호한다고 판단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중이면 적어도 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
- 인터넷 검색 해봐도 수급자이면서 유형 II에 참여하면 대충 2회만 참석하면 수당받을 수 있다고 블로그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음
- 전산상 파악되지 않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도 있음
  - 예를 들면 어촌마을 그물 정리작업은 당일 일당을 현금으로 받아가는데 어떠한 전산에도 소득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생계급여를 수령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로 수당도 지급받고 그물 작업 인건비도 받아 갈 수 있음

□ 서울 사회복지전문가

- 자활일자리는 근무시간이 길고 훈련기회가 없지만, 국취제도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

기에 (컴퓨터 교육, 바리스타, 제빵 등) 자격증이라도 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에 수당을 지원 받지 않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II를 이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 경남 산청군

- 직업훈련을 통한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 본인이 원하는 자격증 취득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사람, 지역자활센터에서만 일해온 수급자,
  - 혹은 현재의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는데 그렇지 못한 수급자가 증장비 등 자격증 취득하여 일반노동시장 진입하고 싶어하는 수급자가 생계급여 받으면서 취업활동비용 지원받은 사례 있음(그러나 자격증 취득은 하지 못하고 현재는 타 도시지역의 지인의 소개로 일반 제조업 회사에 취업한 사례 있음)
-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게 되고, 상시근로로 취업을 하고 싶은 수급자 혹은 생계비가 적더라도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국취제도를 활용함.
- 조건부수급자중 기술취득 원하는 사람, 일반노동시장 진입을 원하는 사람인 경우 국취 II에 참여 희망함.
  - 그러나 구직촉진수당은 생계급여와 관련이 있어서 수당을 받으면 생계비가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 있어서 굳이 국취제도 진입을 하지 않을려고 함

□ 충남 사회복지 전문가

- 노동부와 복지부는 취업지원제도 이용현황 파악시 수급자 규모를

파악해야 하며, 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한 수급자의 특성을 유형화하고, 취업까지 연계되는지 파악해야 함.

-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고용부와 복지부가 수급자의 취업에 대해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수급자의 취업은 복지부의 자활영역에서도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음.

- 오히려 현 자활제도 내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현장에 반영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함.

-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취업을 적극적으로 원한다면 수급자의 역량과 근로가능성을 살릴수 있는 민간기업과 연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런 경우라면 애초에 '근로능력이 없는'대상자로 분리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인 것임.

#### □ 경기 고양시

- 자활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취업지원제도를 취업을 위한 단계로 활용하기 보다는 생계비를 받기위한 필요조건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 근로능력 부족으로 인한 경우도 있으며 일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생계비 수령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

- 자활사업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취업교육이 여러 가지 있으나 참여자가 직업을 택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 물가상승 등 다양한 이유로 취업교육을 통해 얻은 직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급여의 수준이 참가자들 판단에 생계비를 포기하고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수준임.

□ 기타 의견

- 자활은 단순업무와 적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낮은 분들이 선호하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자가 취업을 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담을 선호함.

**4. 부정수급 사례**

- (질문) 청년층에서 실질적으로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만 수급자격 획득을 위해 주민등록표상에서 세대 분리하여 소득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례 등 부정수급과 관련한 이슈가 존재합니다.
  - 현장에서 이러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확인이 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서울 광진구청

- 청년의 부정수급사례는 부모자녀 동거세대이나 자녀가 34세가 지나 자립지원 별도가구특례 해당이 안되는 경우, 연령이 34세 초과된 자녀를 주민등록상 분리시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동일가구로 처리하여 부정수급을 사전 방지함.
- 또 다른 부정수급사례는 생계급여는 미신청하고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만 신청하는 경우 실제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음.
- 생계급여 신청자는 조건부수급자 책정 및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 요청 등으로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나 생계급여 미신청자에 대한 소득파악은 어려움.

- 이는 국기법만의 소득파악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일반 시장에서 소득신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충남 서천군

- 생활이 안정된 가정의 경우 취업준비시 부모 경제적 지원을 받지 만 취약계층은 부모로부터 충분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알바 등을 통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어 질 높은 취업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음.
  -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거나 알바 및 일시 취업을 통해 근로 장려금 등도 지원받는 사례가 있음
- 일부 사례이지만 부친 회사 경영수업을 위해 타인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며 청년 적금 및 중소기업 재직시 적금 등을 지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음. 이는 거주지가 다르고 세대도 분리된 사례임

□ 경북 울진군

- 현재는 조사와 관리 업무가 전문화 되어 현실적으로 세대를 분리 하게 되어 부정수급을 하게 될 경우 오랜시간 지속되기 전에 부정 수급을 파악하고 조치를 하게 됨
- 신청단계에서 담당자가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분리조치 하였다면 조사단계에서 담당자는 같은 부정을 체크할 것이고 또한 관리하면서 같은 부정을 추가 체크함에 따라 실제로 부정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도록 시스템화 하였음

□ 경남 산청군

- 사례1 : 기초수급에 진입하지 못하는 부모(노인부부)와 주소분리 하면 기초수급이 가능한 자녀 A 사례



- 부모는 다른 자녀 부양능력 있음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 A는 기초 생계, 의료를 받지 못했지만 분리함으로 인해 자녀 A(은둔형 외톨이, 장애인등록은 되어있지 않지만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정도)는 기초생활 조건부수급자로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부모는 기초수급에 미해당, 자녀A는 분리함으로 인해 조건부수급자로 사회서비스형 월 1,231천원 자활근로소득 있음
  - 만약 자녀A가 노인부부인 부모와 같이 거주할 경우, 거의 평생 은둔형 외톨이로만 생활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 주소를 분리하여 조건부수급자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게 됨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에서는 벗어남.
    - 자활센터에 일하게 됨으로 동료 수급자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성격도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 현재는 자활특례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에 근로하면서 혼자 생활하고 있음.
    - 잠재적 사회문제 예방은 물론 자녀A의 자활의지 높음
- 사례2 : 기초수급에 진입한 부모(노인부부)와 주소분리 상관없이 기초수급 가능한 자녀 B의 사례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로 3명(노인부부, 자녀B)이 거주함 (자녀 B : 은둔형 외톨이로 정신장애 의심됨)
  - 가구원 3명일 경우 월 생계급여 466천원 받음(공적소득 : 부부 기초연금 492천원, 국민연금 300천원 수령으로 총 792천원이 소득으로 산정)
  - 가구를 분리하면 부모(부부노인)는 생계급여비 월186천원 받으며, 자녀 B는 1인 가구로 조건부수급자로서 생계급여 월 583천

원을 받다가 지역자활센터에 근로하게 됨으로 인해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비 월 1,231천원을 받고 있음

- 두가지 사례 모두 은둔형 외톨이 사례이며 사회와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잠재적인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긍정적 측면 및 향후 자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행정에서 융통성 있게 적용한 개별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의 관점

□ 기타 의견

- 의료급여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은 부양의무 제도가 폐지되어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의미가 없고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경우 적발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 부정수급 발생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참여자한테 확인 및 안내 후 구청에 보고로 이어짐
- 부정수급 사례 중 축진수당 자격 요건에 있어 근로소득, 근로활동 등을 허위 또는 미신고로 조사과정에서 부정수급으로 발견된 사례는 있었음
- 청년이 아닌 일부 수급자 중에서 소득이 높은 자녀가 금융정보에 잡히지 않는 방법으로 소득 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게 현물이나 현금으로 수급자에게 지원을 하며,
  - 수급급여는 급여대로 지원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 이 경우 통합조사팀 담당자와 읍면동 담당자가 함께 가정방문을 하여 면담을 통해 신고되지 않는 소득이나 수급혜택을 받기위해 위장전입 등을 한 것이 확인이 되면 대상자에게 확인서 징구 후 자격을 중지시키거나 급여 환수처리까지 하는 경우도 있음

## 5. 취업거부에 따른 자활근로 재참여 제한 사례

-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민간시장에 취업하면 자활근로 이상의 소득유지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활근로 재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022년 자활사업 안내, p. 32).
- 현장에서 이러한 제한 조치가 작동하고 있는지요?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경우 말씀해주시오.
  - 이러한 조치가 작동할 수 없다면 작동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주시오.

### □ 서울 광진구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종결되는 주요 사례는 단기취업 종결이거나 대부분 미취업종결이 많음. 이 경우 3년간 고용센터의 이용 제한이 있어 지역자활센터로 의뢰함.
  - 그러나 자활센터 이용도 3회 제한이 있으나 고용센터 제한기간인 3년 사이에 3회 이용이 종결되는 사례가 빈번함.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지역자활센터 모두 이용하지 못할 경우 생계비가 미지급되어 생계가 곤란하여 대부분 수급대상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조건유예기간을 받아 생활을 유지
- 일선 자활담당자의 의견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제대로 된 취업지원이 안되는 현실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재참여 제한기간 3년은 너무 과하다고 평가
  - 출소자와 장애인 취업지원제도와 비교시 국취의 제한기간은 너무 길고, 효과성 없어 현실적으로 형식적인 제한일 뿐임

□ 충남 서천군

- 자활사업 참여자 대부분 일반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근로미약자로, 일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부 수급자는 조건불이행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자활기업을 통해 자활을 도모해도 탈수급과 창업자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기업을 이끌어갈 주도자 즉 팀장들과 창업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경우 많음.
  - 창업과 자활보다는 수급에 안주하길 희망하며 수급유지를 위해 자활에 남아있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함
- 자활의 욕구가 강하게 제도적 뒷받침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참여자들의 근로 능력 여부도 중요한 요소이고, 수급자로서 제도권안의 안정된 보호를 지속시키려 하는 수급자의 여러 요인도 살펴 봐야 할 상황임

□ 세종시

- 제한 보다는 취업을 함으로 인해 연계되는 소득에 대해 공제금액이나 기간 또는 범위를 넓게 적용시켜 수급대상자들이 취업시장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취업이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

□ 광주 광진구

- 현장에선 실질적으로 이 방안은 실행되고 있지 않음.
- 객관적으로 대상자가 소득유지가 가능한 상황임과 취업을 거부한다는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자활 근로 재참여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봄.

- 다시 자활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는 주로 중년층임. 이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외부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 조건이행을 위해 다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 사업장에서 4,50대 이상의 구직자들을 잘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들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정책들이 필요함.
- 민간시장 부적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활근로를 희망하는 수급자는 근로할 수 있도록 제한적 허용 사항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강원 홍천군

- 자활수급대상자에서 국민취업대상자로 전화될 시, 생계급여 중지가 필요. 별도로 국민취업대상자 보장을 만들어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행복e음과 연계하여 책정 해주어야 함
- 이러한 대상자들은 별도 관리를 해야 하며, 국가의 급부를 받았기에 중복 급부를 받을 수 없게끔 기초생계급여만 5년 제한을 뒤야하며, 시군구청에서는 그 외의 복지급여 기준이 될 시 책정 유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임

□ 경북 울진군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민간시장에 취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적인 입장에서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파악됨
- 이 경우 조건부수급자는 기타소득활동이 가능한 경우로 분류하여 생계급여 지급 제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되는데 자활사업

재참여를 제한하는 것 또한 공적인 보호에 기대는 의존성을 낮추고 적극적인 생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

- 취업도, 창업도 어떤 것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제한한다면 더 이상 생활이 불가능 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신병적인 증세와 많이 멀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하여 보호 측면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제공되어야 함

○ 현장에서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라고 초저임금을 제공하면서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활 형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체 자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매우 낮추도록 권고 중.

-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을 엄격한 형태로 변형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고민할 사항

#### □ 충남 사회복지전문가

○ 사례별로 거부하는 사유가 아래와 같이 다양할 수 있을 것임.

- 자활제도의 기준이 이용자의 경제수준과 근로능력 정도인데, 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이 경제생활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든지,
  - 덜 벌더라도 경제활동 시간이나 근무 강도, 취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거부한다든지, 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이 지속가능한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하든지 등 다양한 영역으로 나뉠수 있을 것임.
- 자활근로 참여기간 제한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지역적 규모나 지역자원, 경제활동 가능범위, 자활근로 참여자의 특성 등으로 기간 제한이 제대로 이수되는지 파악이 필요함.

□ 기타 의견

- 자활 참여자들 근로능력이 미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피하고 있으며 현 생활에 변화를 두려워하여 안주하고 싶은 욕구가 강함
- 자활에 머무르는 34세이하 조건부수급자 중 자활 대상자는 일정기간이 경과하고도 자활에 머무르는 경우 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 부정수급 사례 중 촉진수당 자격 요건에 있어 근로소득, 근로활동 등을 허위 또는 미신고로 조사과정에서 부정수급으로 발견된 사례는 있었음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4장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실태 및 지원 체계

제1절 모니터링 개요

제2절 모니터링 결과



## 제 4 장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실태 및 지원 체계

### 제1절 모니터링 개요

#### 1. 사업의 개요

□ 자립지원사업은 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 아동이 자립생활 능력을 개발하고 준비하여 성인기에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동안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 대상(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보호가 종료되어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

○ 매년 약 2,500명의 아동이 양육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살던 곳을 떠나 자립을 시작함

〈표 4-1〉 2017~2022년 자립준비청년 현황 추이

(단위: 명)

구분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전체
2017년	1,034	153	1,406	2,593
2018년	1,65	192	1,349	2,606
2019년	992	172	1,423	2,587
2020년	827	168	1,373	2,368
2021년	726	157	1,219	2,102

자료: 아동권리보장원(2021). 2021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 보호가 종료됨과 동시에 진학과 취업 등의 진로를 결정하고, 원가정 복귀를 못할 경우에는 독립적인 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 등 생활에 많은 변화를 경험

○ 이들 중 대학에 진학하여 졸업하는 비율은 낮고, 그에 따라 좋은 일자리를 얻는 비율도 낮음

〈표 4-2〉 2021년 자립준비청년 최종학력

(단위: 명)

구분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전체
계	726	157	1,219	2,102
중등졸업	1	0	7	8
고등중퇴	8	8	48	64
고등재학	23	6	6	35
고등졸업	336	63	377	776
대학중퇴	20	6	89	115
대학재학	227	44	167	438
대학졸업	95	23	504	622
기타	16	7	21	44

자료: 아동권리보장원(2021). 2021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왔으나, 여전히 자립이 어려운 상황

○ 최근, 양육시설 출신 청년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 보호종료 이후 경제적 문제와 미래에 대한 고민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 및 자립 성공률 제고를 위해 경제적 지원은 계속해서 확대하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정부는 2021년 7월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에서의 지원 정책을 확대할 것을 예고함
- 2022년 11월에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보도자료를 통해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인상과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을 발표함

□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

〈표 4-3〉 2023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추진과제		이전	이후
경제적 지원 확대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수당 월 35만원</li> <li>■ 자립정착금 800만원 이상, 금융교육 이수와 무관하게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수당 월 40만원</li> <li>■ 자립정착금 1,000만원 이상, 금융교육 이수와 연계하여 지급</li> </ul>
	디딤씨앗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딤씨앗통장 지자체 명의 계좌, 잔액 확인 어려움</li> <li>■ 인출 시 자립목적 증빙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딤씨앗통장 개인 계좌로 연결, 어플로 잔액 파악 가능</li> <li>■ 인출 시 자립목적 증빙 간소화</li> </ul>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의료비 지원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부담금 경감 (의료급여 2종 수준)</li> </ul>
	기초생활보장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사업소득공제(50만원+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사업소득공제(60만원+30%)</li> </ul>
자립 기반 구축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임대(전세·매입·건설) 지원</li> <li>■ 전세임대주택 만 20세 이하 무상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임대 연간 2,000호 우선 공급</li> <li>■ 전세임대주택 만 22세 이하 무상지원</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리어넷 보호아동 전용 온라인 진로상담 창구 운영</li> <li>■ 대학생 국가장학금 II유형, 근로 장학금 우선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리어넷 진로상담사 맞춤형 진로도 역량 강화</li> <li>■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li> <li>■ 대학생 해외연수 기회 제공</li> </ul>

추진과제		이전	이후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일경험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센터 - 자립지원전담기관 협업 강화</li> <li>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li> </ul>
	자립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민간 자립지원 정보 분산</li> <li>도움 필요 시 연락체계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구축</li> <li>자립준비청년 전용 콜센터 운영</li> </ul>
사회적 지지 체계 강화	자립지원 전담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120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180명), 지속 확충 추진</li> </ul>
	자조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포터즈 활동비(월 10만원) 신설, 지역별 모집·활동</li> </ul>

자료: 보건복지부(2022).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최종), 2022.11.17, 보도자료

## 2. 모니터링 내용 및 진행 방식

□ 자립준비청년의 실태 및 지원 체계 관련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3차 포럼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 관련 지원체계에 대해 4가지 설문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

□ 모니터링 요원 설문 내용

○ 질문 1) 보호 연장에 대한 의견

- 학업,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보호 연장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보호가 종료되는 문제가 있음. 보호 연장에 대한 의견

○ 질문 2) 자립기반 지원에 대한 의견

- 자립수당, LH 공공임대 등을 통해 다양한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있으나, 생계나 주거안정을 유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
- 자립기반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면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하는지 의견

○ 질문 3) 일상적 자립기술, 문제대처에 대한 방안

- 자립준비청년은 일반 청년보다 낮은 대학진학률과 높은 실업률을 보이며, 자산관리 등 일상적 자립기술이나 문제대처도 다소 미숙.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질문 4) 사회적 지지체계 방안에 대한 의견

- 불안, 우울, 자살 생각 등 심리·정서적 상태가 매우 취약하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제2절 모니터링 결과

### 1. 보호 연장에 대한 의견

▣ (질문) 학업,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보호 연장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보호가 종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호 연장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 전북 전주시(1)

○ 자립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사회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대책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가정에서 양육되고 성장한 아동들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고 취업을 하더라도 거리상의 이유가 없다면 결혼전까지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일반적인 가정환경과 달리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되면 양육시설에서 퇴소를 하여야 하는 현실임
- 광주 광산구 퇴소 청년의 잇단 자살로 정치권과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리면서 자립준비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 전북 전주시(2)

○ 청년층의 자립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여 보호기간 연장 필요

- 취업 후에도 일정 기간 관리 필요. 불안정한 취업상태(기간제 및 비정규직)에 있어 실직과 취업을 되풀이하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게 되며 이는 심리적 위축 등으로 사회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며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 인천 지역자활협회

○ 보호 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의 60%가 기초수급자로 전락.

- 취업지역자활센터에서 취업 알선, 직업훈련 지원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정착하지 못하는 상태로 지내다가 불이행으로 종료됨

□ 광주 광산구

○ 보호기간 연장과 함께 주거시설, 생활비 등 지원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취업을 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나 보호시설이 대학 또는 회사 근처에 없는 경우가 있음. 주거지를 따로 마련해 살아가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됨
- 이 외에도 부가적으로 필요한 기숙사비, 용돈, 교재비, 식비 등에 대한 부담이 있음

□ 경남 의령군

○ 기초수급자 급여와 보호가 종료됨에 따라 받는 지원금을 동시에 수령 가능함에 따라 스스로 퇴소하는 경우가 있음

- 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으면서 자립수당, 자립정착금(의령군 8백만원, 자치단체별 금액 상이)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함

□ 인천 부평구

- 보호기간 연장과 함께 불안정한 정서를 완화,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해 독립된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 준비 기간'이 필요
  - 단순히 보호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자립심을 약화시키고 의존적, 수동적인 삶을 지향할 수 있음
  - 보육원에서 전반적인 생활 도움을 받아 수동적 집단생활에 익숙해져 있음

□ 충남 서천군

-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 연장은 필수이고, 사후관리 기간도 연장이 필요함
  - 만18세가 되면 어떠한 준비도 없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를 마친 상태로도 혼자 생활하는 것은 버거움
  - 경제적, 의식주, 취업, 진학 등 새출발에 따른 매뉴얼 필요

## 2. 자립기반 지원에 대한 의견

■ (질문) 자립수당, LH 공공임대 등을 통해 다양한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있으나, 생계나 주거안정을 유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자립기반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충남 서천군

- 공공임대주택 입소를 필수로 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공동생활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자립준비청년이 공공임대주택 입소 신청절차를 거쳐야 함.

- 수당지원보다는 주거안정과 취업이 자립기반조성에 더 중요한 요소
  -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가 보장되면 자립수당은 미미한 부분임

□ 인천 지역자활협회

- 경제 관념이 부족하여 자립수당을 생활비, 학비 등에 어떻게 나눠서 써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음
  - 예, LH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원받았으나, 아파트에는 어릴 때 헤어졌던 어머니가 살고, 자신은 혼자 월세로 살고 있음. 자립수당의 대부분을 월세에 지출하여 식비 부족을 호소한 경우가 있음

□ 광주 광산구

-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 보호기간 종료 이후 아동과 별도로 다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호대상 아동이 후원자로부터 받는 도움보다 보호종료 이후 받을 수 있는 자립수당, 자립정착금에 대한 선호가 더 커 조기 퇴소를 하는 경우가 있음
  - 보호기간 종료 이점 아동에 대해 기숙사비용, 심리치료 비용 등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

□ 경남 의령군

- 자립정착금 인상과 함께 금융교육이 동반될 필요

- 자립정착금은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3백만원에서 8백만원 사이로 지급됨. 현실적으로 지원금이 크지 않아 홀로 자립하기에 부족함
- 전월세 사기에 취약하고 대처 능력이 미약함.

□ 인천 부평구

- 보호종료청년이 주체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경제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제도 필요
  - 다양한 사회 경험과 1대 1 멘토-멘티 관계를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정서적·사회적지지 체계 마련 필요

□ 서울 종로구

- 보호중단아동 중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시설을 무단 퇴소한 아동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나 자립지원 매뉴얼이 부재하여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제도적 보호망 밖에 놓여 생활고를 겪거나, 노숙, 범죄에 노출됨. 이에 따라 국가 지원 대상에 보호중단아동을 포함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 중도퇴소아동에게 자립수당 지급은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아동의 가출 등의 다양한 사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 경북 울진군

- 양육시설 내부에 자립지원시설을 병설로 운영하여 퇴소아동이 큰 생활변화를 겪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함

- 위탁가정아동은 위탁부모님과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시설에서 지낸 아동보다 안정된 자립준비가 가능
- 자립지원시설이 양육시설 내부에 갖춰진다면 전담요원선생님과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을 것임

### 3. 일상적 자립기술, 문제대처에 대한 방안

■ (질문) 자립준비청년은 일반 청년보다 낮은 대학진학률과 높은 실업률을 보이며, 자산관리 등 일상적 자립기술이나 문제대처도 다소 미숙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인천 지역자활협회

- 멘토-멘티 제도 등 지속적인 교육과 자립 정보 제공 필요
  - 자립준비청년은 일반 가정자녀에 비해 부모의 물질적·정서적·정보적 지원이 부족하여, 문제 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음
  - 이에 따라 멘토-멘티제도를 운영하고 자립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하여 자립 정보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충남 서천군

- 자립준비청년은 보호기간 종료 이후 의식주 및 삶의 전반을 스스로 해결하여 생활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
  - 취업의 어려움, 불안정한 고용, 범죄 노출, 조기 출산, 주거나 경제적 어려움, 부정적인 인생 경험, 사회지지체계 부족, 무관심, 편견, 동정 등 다양한 어려움을 혼자 해결
  - 자립준비청년센터 등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심리,

정서, 사회적 관계, 자산관리, 진학, 취업, 주거, 고용, 교육,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광주 광산구

- 보호기간 동안 문제 발생 시 보육원 관계자 또는 담당 선생님이 많은 도움을 주고 해결해주기 때문에 보호 종료 직후 직면하는 현실에 부적응
  - 15세 이상이 되면 시설에서 자산관리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그러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음
  - 보호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융관리를 받고, 관련 제도 안내가 이루어져야 함

□ 인천 부평구

- 보육원 퇴소와 동시에 자립수당, 정착지원금, 후원금 등 갑작스럽게 많은 현금이 생김
  - 이에 따라 보호기간 종료 이전에 금융교육을 통해 현명한 자립지원금 관리, 저축과 투자의 필요성, 올바른 소비와 신용지키기 등 경제자립에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서울 종로구

- 대학진학률 확대를 위한 기숙사 제공,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간소화 등 일상적 자립기술 지원 필요
  - 대학 기숙사 입사 우선 대상자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
  - 국가장학금 대상자 증빙을 위한 부양관계단절 증명 간소화

-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포함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 지원
- 자립 선배가 실제적인 현장 의견을 줄 수 있는 공간 마련

#### 4. 사회적 지지체계 방안에 대한 의견

■ (질문) 불안, 우울, 자살 생각 등 심리·정서적 상태가 매우 취약하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제주 조천읍

- 자립준비청년은 일반 청년에 비해 심리·정서적 취약성이 3배 높으며, 보호 종료 후 3~4년이 지나면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자살 생각 및 경험 비율이 높음
  - 사례, 보호기간 종료 두 달 후 여름방학에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한 A씨는 자살한지 3인 뒤에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됨
  - 사례, 장애가 있는 B씨는 만 18세가 되면서 보육시설을 나와 아버지와 임대아파트에서 살았으나 기초생활비와 장애연금으로 생활하기 힘들어 극단적 선택을 함
- 정서적 지지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청년마음건강 사업, 마음건강 프로젝트 사업 등 공공, 민간 영역 모두에서 지원 필요

□ 전북 전주시

-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에 대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하여 친권 공백 상태의 자립준비청년을 지원
  - 현재 사후 관리 기간인 1년을 연장하는 방안 고려
  - 국민기초수급 관련 의사무능력자는 급여관리실태를 반기별로 조사하여 수급권을 보호

□ 인천 지역자활협회

- 보호기간 종료 후 지역자활센터로 위탁되는 자립준비청년의 80% 이상이 불안, 우울, 공황장애, PTS(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증상을 겪음
  - 사람에 대한 불신, 특히 여성 청년은 남성과 같은 공간에서 근로하는 것을 꺼려함
  - 퇴소 후 고독의 공포증,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됨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동주택을 제공하여 정보 교환과 멘토-멘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체계 필요

□ 충남 서천군

- 자립준비청년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는 지원기관, 지원기관 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 예, 서천군의 경우 청년 창업 시 천만 원의 지원이 있음. 자립준비청년이 이를 검색해서 신청하고 공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 필요



□ 광주 광산구

- 보호기간 중 심리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호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심리·정서 치료 필요
  - 부모, 친인척으로부터 양육거부, 학대 등의 사유로 보육원에 입소한 경우가 있음
  - 본인이 치료의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5장

###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발굴관리시스템의 성과와 한계

제1절 모니터링 개요

제2절 모니터링 결과



## 제 5 장

#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발굴관리시스템의 성과와 한계

### 제1절 모니터링 개요

#### 1. 사업의 개요

-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직접 찾아가 상담·지원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 하기 시작
-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편리하게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적극 발굴·협력하기 위한 조치(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2022, p.76<sup>1)</sup>)
-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법」 제10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2) 1.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및 제공규모  
2. 수급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  
3.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 「사회보장급여법」 제11조(정보 공유 등의 협조 요청) ① 보장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3)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및 시행령 제6조의2~제8조 등이 해당

○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은 취약계층의 위기징후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고위험 가구를 예측하고 선별하여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데 목적

- 그간 지역사회에서 읍면동 주민센터 내방 상담, 자체 발굴 또는 주민의 신고에 의존하여 취약계층을 발굴하던 체계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자체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의 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

○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대상자에게 다양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신청주의·정보수집 등의 한계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미흡하는 지적

- 
- 3)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2.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6.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서  
 7.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의 소방대  
 7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7의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7의4.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 공공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발굴체계 확립 필요성에 대해 인식
  - 18개 기관 34종의 정보('22년 9월말 기준)를 수집·분석하여 고위험 가구를 예측·선별하고, 지자체를 통해 상담·조사 후 복지 급여·서비스 지원(김은하, 2022)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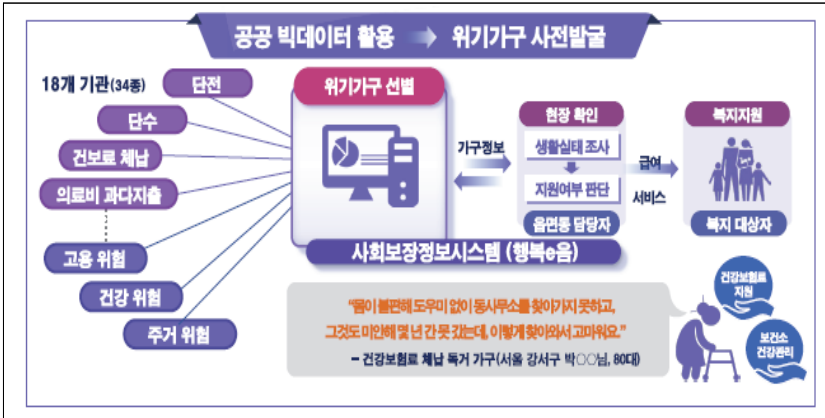
시점	내용
2014.12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2015년 1월	사각지대 시스템 필요성 보고 15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보고 「“사각지대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잠재 위기가구 주기적 모니터링 추진」
2015년 1월~9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 연구·용역 수행
2015년 11월	2015년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착수('15.12월 18중)
2015년 12월	1차 시범 오픈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구축((위기정보 18중)
2022년 9월	위기정보 34종 정보 연계로 운영
2022년 12월 현재	위기정보 39종 정보 연계로 운영

자료: 김은하(2022).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4차 포럼(전문가 발표자료)

□ 사각지대 발굴정보시스템의 개념도

-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위기가구 징후 정보 들을 연계하여, 위기가구 예측모형을 통한 대상자를 포착하여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현장 확인을 지원하는 구조체계

[그림 5-1]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 개념도



자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p.79.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업무처리 절차

○ 중앙 발굴 대상과 지자체 자체 발굴 대상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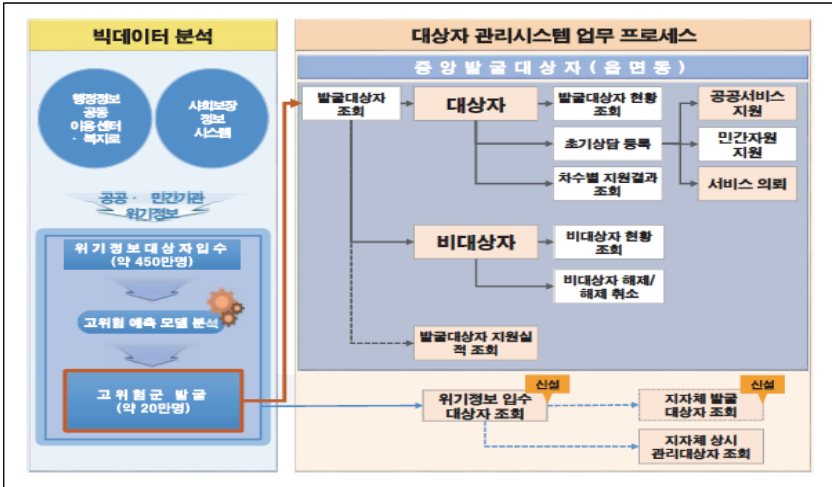


자료: 김은하(2022).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4차 포럼(전문가 발표자료)

○ 방문 결과(대상/비대상) 입력, 대상자 중 공공, 민간 복지지원지원 현황 관리



○ 지자체 발굴 활동 지원을 위한 기능 강화



자료: 김은하(2022).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4차 포럼(전문가 발표자료)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정보 현황

○ 2022년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하여 사각지대 발굴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하고 있는 정보는 18개 기관으로부터 34종

- 대표적인 위기정보로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의료비 과다지출 등에 대한 정보
- 주요 유형으로는 요금체납, 취약생활, 긴급상황, 근로위기, 관리대상 외 기타 민감정보 등이 포함
  - 요금체납 관련 정보는 전기료, 건보료, 국민연금, 주거관리비, 임대주택임대료 등
  - 취약생활은 의료비용 과다지출자(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연체자(신용정보원) 등의 자료
  - 긴급상황 관련 자료는 기초긴급신청탈락가구, 화재 피해자, 세대주 사망변경 세대원(행안부) 등

- 근로위기로 대표되는 정보는 실업급여 미수급가구, 일용근로자, 개별연장 급여자 등이며, 이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입수
- 아울러 타복지사업으로 교육부 위기학생, 보건소 집중관리군 등도 연계하고 있음
- 그리고 민감정보로서 자살 고위험 가구, 자해 및 자살 시도자 정보, 범죄 피해가구 등의 정보를 연계하여 취약계층을 포착하는 데 활용

〈표 5-1〉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 34종 연계정보 현황

근거 : 법률(제12조제1항 각호)		근거 : 시행령(제8조제2항 별표2 각호)	
정보내용	보유기관	정보내용	보유기관
단전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단수	상수도사업본부	의료 위기 <sup>1)</sup>	
단가스	도시가스사	범죄 피해	경찰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 중 학교장 추천	교육부	화재 피해	소방청
		재난 피해	행정안전부
건보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주거 위기 <sup>2)</sup>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방개발공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보료 부과내역			
기초수급 탈락·중지 복지시설 퇴소	보건복지부	고용 위기 <sup>3)</sup>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금융연체	신용정보원	방문건강사업 대상	보건복지부
통신비 체납정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 ① 의료비 부담 과다, ② 장기 요양 2) ①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② 월세 기준금액 이하 ③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자 ④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 3) ① 개별연장급여 대상자 ② 실업급여 수급자(임금제불, 폐업)	기저귀 분유지원		
		신생아 난청지원	
		영양플러스 미지원	

근거 : 법률(제12조제1항 각호)		근거 : 시행령(제8조제2항 별표2 각호)	
정보내용	보유기관	정보내용	보유기관
③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이 없는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④ 일용근로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⑤ 산재요양종결 후 근로단절자		전기로 체납	한국전력공사
		자살고위험군	자살예방선택
		내원사유 자해·자살	응급의료선택
		휴·폐업자	국세청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1일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생 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대두

○ 정부는 2022년 11월 23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 책’을 발표(보건복지부, 2022. 11. 23.)<sup>4)</sup>

- 주요 추진과제로 ①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② 신속하고 두터 운 위기가구 지원, ③ 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 3개 분야 12개 과제

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11. 23.), “촉촉한 위기가구 발굴로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하 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발표(<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38529>에서 2022.11.26.인출)

[그림 5-2]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주요 추진과제

목표		모두가 행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전략		◆ 정확한 발굴로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 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및 적극 지원	
추진 과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및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고도화 ▶ 지자체 인력운용 개선 및 발굴역량 강화 ▶ 지역 기반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 구축 및 대국민 홍보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 위기가구 연락처 정보연계 및 신속한 소재 파악 ▶ 복지멤버십 및 민간기관 신청지원 확대로 위기가구 예방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 ▶ 발굴 후 공공-민간자원 연계 강화	
	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 고독사 예방관리체계 구축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전·후 자립지원 강화 ▶ 新 취약청년(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발굴 지원체계 마련 ▶ 청년 지원정책 정보 통합 제공 및 정책 소통 강화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11. 23.),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로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발표, p.3

<표 5-2> 복지 사각지대 대책 전·후 비교 (수원 세모녀 사례)

단계	현행('22.8. 기준)	개선(예상)
위기 상황 파악	질병, 채무 정보 미연계	질병, 채무 등 위기정보 입수 확대로 위기상황 조기 포착
	개인별 발굴모형으로 가구전체 위기 포착 미흡	세대별 위기정보를 함께 분석하여 위기 파악
이웃의 위기알림신고	이웃, 신고의무자 등 위기 알림·신고 없음	의료사회복지사(병원방문 시) 또는 이웃 통해 지자체 연계
복지담당공무원의 연락방문	가구 전화번호 입수 불가	행안부, 통신사 등과 위기가구 전화번호 연계하여 신속 연락방문
발굴 후 지원	-	① 복지담당공무원의 초기상담 통해 긴급복지지원(생계/의료) ② 종합상담 및 통합사례관리 실시 ③ 가구의 상황필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급여 및 공공민간자원 등 연계* * (예)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자격 충족시), 신용회복위원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11. 23.),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로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발표, p.16.

## 2. 모니터링 내용 및 진행 방식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관련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4차 포럼을 진행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관련 전문가 발제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발굴관리시스템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공유
- 이와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에 대한 현장의 평가와 실제 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관련하여 아래 5가지 설문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

□ 모니터링 요원 설문 내용

- 질문 1)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
  - 현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에 대한 대체적 평가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입장과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기관 입장 두 측면에 대해 의견
- 질문 2)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준에 따른 위기정보 적절성
  -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기준이 되는 위기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 바 있음. 이러한 위기정보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
    - 신규로 연계되는 위기정보 5종에는 중증질환 산정 특례, 요양급여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이 있음.

○ 질문 3) 위기정보 불일치 사례 및 조치

-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였으나 해당 가구가 살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모르는 경우 등 위기정보 불일치와 관련한 이슈가 존재
- 현장에서 이러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확인이 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사례에 대해 기술 부탁

○ 질문 4) 사후조치 매뉴얼 부재에 대한 의견

- 복지급여 신청 및 상담 내역이 없어 사회보장시스템 내에 핸드폰 번호 등 연락처가 확보되지 않아 지자체가 추가적인 발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례 등 사후조치 매뉴얼 부재 등으로 인한 정보 연계 상의 누락 문제가 발생
- 현장에서 이러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확인이 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사례에 대해 기술 부탁

○ 질문 5) 제도 개선방안

- 위기정보 개선 등 향후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제2절 모니터링 결과

### 1.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

- (질문) 현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에 대한 **대체적 평가**가 어떠한지 말씀해주십시오.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입장에서 듣는 평가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기관 입장에서 듣는 평가

#### □ 전북 군산시

#####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입장에서 듣는 평가

- 위기정보 34종과 '22년 10월부터 신규 5종이 추가되어 여러 기관에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유로 본인의 신상정보 누출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현하며,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연락을 취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함.

#####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기관 입장에서 듣는 평가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전화, 가정방문 등)를 실시하였을 때 상당수가 허수(미거주, 빈집, 주소 불명확, 연락두절, 소득 및 재산 초과 등)가 포함
  - 또한 연간 6차수의 중앙 및 지자체 발굴대상자 중 비대상자로 처리 한 경우에도 발굴관리 시스템에 반복적으로 조회되고 있어 행정력 낭비가 우려됨.
-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이 국정평가지표에 포함되어 단순상담 사례의 경우에도 실적 위주의 평가로 인해 서비스 연계로 처리하는 폐단도 발생하는 것이 현실임.

□ 서울 광진구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입장에서 듣는 평가

- 위기정보의 대상자 중에 청장년층은 아직도 국가지원은 극빈층 및 노년층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며 대상자가 직접 복지상담을 요청하기가 창피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빈곤층의 경우 매일의 생계유지 활동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도 많음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기관 입장에서 듣는 평가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로 발굴되는 조건의 현실화가 필요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로 발굴되는 경우 긴급지원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 기준이 초과되어 타 자원연계 등 서비스 안내시 지원불가능하는 경우가 존재
  - 단순히 몇 개월 간의 공공요금 체납, 특정 기간 과다 의료비 지출 등 특정적인 한두가지 위기정보만으로 발굴하기 보다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로 발굴되는 조건을 조금 더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 예) 최소 몇 가지의 위기정보를 종합(국민연금체납+건강보험체납(체납요금확인)+통신비체납 등)하여 발굴 대상자로 선정

□ 인천 지역자활센터협회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입장에서 듣는 평가

- 복잡한 복지제도 내용을 잘 모르거나 혹은 갑자기 닥친 힘든상황으로 막막한 현실에 기존의 관계가 단절되는 등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기관 입장에서 듣는 평가

- 지역자활센터 특성상 등록지로 위탁이 오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 발굴과는 다소 명확치 않으나, 취약계층 상담이 이루어질 때 주민등록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존재. 대상자들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음

□ 충남 서천군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입장에서 듣는 평가

- 정보에 취약한 가구나 성격상 노출을 원하지 않아 제도에 대해 신청을 하거나 상담을 진행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방문상담으로 복지제도권 내 진입하는 경우가 있어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장점 존재
- 반면, 개인 신상정보에 대한 노출로 낙인감에 대해 우려와 함께 위기가구로 방문하여 실제 조사시 본인의 소득 재산 기준이 제도권 내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실망감과 불만을 표출하기도 함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기관 입장에서 듣는 평가

- 위기가구로 발굴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대상자도 많으나 방문하여 실제 생활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로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는 등 현장 방문 상담의 장점도 존재
- 반면, 위기가구 발굴시 현장 방문을 하였을 때 단점도 존재
  - 발굴된 사유에 대해 당사자에게 설명시 개인정보 노출 등 불편한 상황이 있으며, 위기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조회되는 경

우가 있어 조사에 곤란(사례, 65세 이상 실업급여 미수급 사유 (65세 이상 노인은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님))

- 수급이 불가능한 세대의 기대심리로 상담에 대한 부담감 혹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공존

#### □ 광주 광산구

#####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입장에서 듣는 평가

- 위기상황에도 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나, 위기가구 발굴을 통해 방문 또는 우편 안내를 받아 지원제도를 알게되고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 존재
- 반면, 어떤 경우로 방문하게되었는지 묻는 경우가 많아 응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 특히 범죄, 채무 등 관계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음.

#####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기관 입장에서 듣는 평가

- 비수급 대상가구의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가구 내 정보 파악이 어려우나 위기정보를 활용하여 상담하는 경우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알맞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반면, 발굴대상자와 상담 진행시 민감한 개인정보 파악 사실에 대해 노출하지 않은 상태로 상담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존재, 개인정보 관련 대응 매뉴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 경남 의령군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입장에서 듣는 평가

- 방송 언론·공공기관에서의 복지제도를 통해 위기상황(부채, 질병, 해체 등)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대상이 있는 반면,
- 긴급의료비, 교정시설 출소자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의료기관, 교정시설 등에서 기존 안내가 되고 있어 발굴이 용이한 점이 있음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기관 입장에서 듣는 평가

- 현재 이장회의, 현수막, 리플렛 등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각종 공과금 체납자료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신용불량자, 파산자, 폐업 신고자, 의료비 체납자, 시설보호 종료아동, 정신질환자 등 신취약계층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공유되면 좋을 것

□ 경북 울진군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입장에서 듣는 평가

- 정보 불일치의 문제와 위기발굴 대상자의 경우 낙임감에 대한 우려, 개인정보 민감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기관 입장에서 듣는 평가

- 자료 추출 및 배포 시기가 다른 점에서 오는 문제, 연락처 정보 불일치 등 정보 불일치 등의 문제는 해당 업무 인력대비 많은 업무량과 피로감이 존재

□ 경기도 광주시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입장에서 듣는 평가

- 복지대상자로 발굴되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이나 소득 초과 등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복지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취해지는 상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존재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기관 입장에서 듣는 평가

- 위기가구 대상 명단을 통해 발굴하는 것에 대해 장점이 존재하지만, 반면 복지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안부를 묻는 것에 어려움도 있음
- 또한 연락두절 혹은 만나지 못한 대상자에게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담당자 책임이라는 막연한 불안감도 존재

□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입장에서 듣는 평가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제도권 내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의 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는데 장점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기관 입장에서 듣는 평가

- 시스템을 운영하는 팀과 직접 대상자를 찾아 다니는 발굴팀 간에 서로 연계체계도 더 긴밀해야 할 것으로 생각

□ 경남 산청군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기관 입장에서 듣는 평가

- 시스템으로 통보되는 명단의 대부분이 실제 복지 사각지대대 상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행정력이 낭비되기도 하며, 발굴 대상자의 불만이 표출되기도 함
- 복지사각지대로 통보된 경우보다 마을이장이나 의원 등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 등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가 더 많은 실정

□ 기타 의견

○ 건보료 체납대상으로 발굴되는 건수가 다른 위기 정보로 발굴되는 건수보다 월등히 많은데 실제 거주지 및 연락처 부재 등으로 사후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정해짐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대상자를 거른 다음 정보를 주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나올 것 같음.

○ 시스템 상 기 처리된 대상자 등 중복이 되어 통보되는 경우가 존재, 중복을 제외하는 단계가 필요

- 중복 및 확인 불가 자료회신이 줄어들면 인력난에 있는 복지업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절감될 것임

○ 복지사각지대 대부분이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닌 (정신)건강, 실직, 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 단절 등 장기적인 어려움을 가진 경우가 많음

- 이들의 경우 수개월간의 복지지원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거나 일시적인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실직자들에게 건강을 회복할 기간 최소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긴급생계 지원 기간 이후 이전과 동일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반복됨.
- 오히려 가용 가능한 긴급지원등을 기사용 한 후 민간 후원 이외 정부지원도 어렵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2.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준에 따른 위기정보 적절성

■ (질문)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기준이 되는 **위기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정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규 5종: 증증질환 산정 특례, 요양급여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 □ 전북 군산시

- 위기정보의 확대(34종 → 39종)는 더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에 선제적인 대응일 수 있지만 일선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인력이 동일한 상태에서는 업무량 증가로 위기가구의 시급한 발굴 및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 등이 우려, 인력에 대한 보충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의 양적 증대보다 질적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
  - 중앙 및 지자체의 발굴 대상자에 대한 중복 스크리닝과 위기정보의 교집합(예시: 건보료 체납 + 단전단수 + 전기료 체납 +

중증질환 산정특례가 함께 스크리닝 되는 가구)이 높은 대상자부터 시스템으로 1차적 위기도 평가를 해서 정보를 집약하고 정확한 데이터 반영이 필요

- 발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 침해 여부 등 법적검토가 필요

□ 서울 광진구

- 단순 위기정보는 있으나 전화번호 부재 등 정보 불일치 문제와 함께 사회보장서비스 선정기준 초과 등으로 실제 지원대상자로 연계되기 어려움이 존재

□ 충남 서천군

- 현재 장기요양 등급의 사유로 사각지대로 조회되는 대상자가 있으나, 단순히 장기요양등급만으로 사각지대 대상자로 보기 어려움. 장기요양등급의 경우 복합적인 사유가 아닌 하나의 사유로 사각지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

□ 광주 광산구

- 중증질환 산정 특례자의 경우, 장기요양 등급의 경우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산정특례자와 장기 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므로 그 과정중 복지서비스에 대해 상담하고 발굴될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됨.
- 기존 발굴요인 중 기저귀바우처의 경우 대상자가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 또는 장애인, 다자녀 가구(2인 이상) 중위소득 80% 이

내 가구로, 장애인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를  
기저귀 바우처 수급 요인 하나만으로 발굴대상자로 상담을 진행  
하기에는 비효율적이고 상담 또한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함.

□ 경남 의령군

- 39종으로 증가된 것이 적절하나 더 많은 정보가 연계될 필요가  
있음
  - 부채 등 경제적 문제로 고통 받는 대상자와 의료적인 문제, 가  
족 해체로 힘들어 하는 가구를 파악하는 데에 기초자료 등이  
파악되면 좋겠음

□ 경북 울진군

- 양적 증가와 함께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
- 다만, 제공 정보의 종류를 늘린다는 것은 결국은 전 국민을 사각  
지대로 보고 모두 방문하여 대상자를 검토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는 점에서 우려, 최소한의 정확한 개인정보로 최대한 복지 사각지  
대를 발굴하는 등 효율성 제고가 필요

□ 충남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 최근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은 알콜, 약물중독, 조현병, 우울증  
등의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기존의 위기정보오 함께 위의 정보들이 포함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발굴 기준 증가를 통해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조사 명단에 남아 있는 경우 업무적으로 비효율적, 이에 중복 제거 등 중간 필터링 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 서울 아동관리보장원

- 위기 정보가 많아진다는 것은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가는 입장에서 더 많은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기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
- 다만,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정교성이 요구되고, 제공정보의 확대와 함께 담당사회복지사 인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소득재산이 초과 되어도, 취업을 해도 위기가구로 발굴되는 등 시스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점에 시스템의 정교성이 요구됨
  - 또한 더 많은 정보 확대로 조사 대상자가 늘어나는 점에 업무량을 고려한 인원이 배치될 필요가 있음

□ 경남 산청군

- 확대된 위기정보 신규 5종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질 위험도가 아주 낮은 경우, 본인의 신청으로 시스템에 통보된 것으로 생활의 어려움 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지가 있는, 즉 사각지대 대상자로 보기 어려움
- 위기가구 자료 통보시 가구원별로 통보되어 처리건수가 증가되

고, 이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 이에 개인단위가 아닌 가구단위로 위기가구가 통보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고양시

- 다양한 공적자료를 통한 조사대상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주민등록 세대원을 위기정보로 보는 것은 1인가구 증가에 대한 대비라고 추정
  - 다만, 1인가구의 경우 건강, 소득 등의 자료 등 기타 자료를 통해 정제된 자료를 통해 현실적으로 조사 가능한 수량의 자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 3. 위기정보 불일치 사례 및 조치

▣ (질문)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였으나 해당 가구가 살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모르는 경우 등 **위기정보 불일치와 관련한 이슈**가 존재합니다.

- 현장에서 이러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확인이 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전북 군산시

-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전입신고는 되어있지만 실제 미거주하고 있으며, 전입신고 당시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된 연락처가 틀린 경우도 있어 연락이 단지 않는 경우가 존재
  - 이 경우 현장 방문하여 현관 앞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몇 차례

가정방문을 시도하고, 우편물을 검색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음.

- 대상자의 가족이나 지인을 찾거나 행복e음에서 초기상담을 통해 과거 상담이력이 있는지 살펴봄
-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나 인근 부동산 등을 통해 대상자 소재 파악

□ 서울 광진구

- 담당공무원이 가정방문하였으나 주민등록주소지에 살지 않는 경우가 확인된 경우는 미거주로 처리하며, 전화번호 부재 등으로 추가 실거주지를 파악하기 어려움.
- 단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통장 등 지역주민으로부터 상담요청이 온 경우는 먼저 주민등록말소 등 전입신고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대한 개입을 함. 주민등록 재등록에 따른 과태료를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하고 추후 복지서비스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 충남 서천군

-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모르는 경우가 존재, 이러한 경우 해당 읍면으로 체계적인 연계시스템이 필요

□ 광주 광산구

- 실제 거주지를 찾아가보면 다른 사람이 살고 있거나 전혀 사람이 살지 않을 곳(빈 공터)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주소지도 상이하고 전화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비대상 처리함.

□ 경남 의령군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실거주 중인 사실에 대해 알려줌. 공적 및 민간자원을 개발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공동사례관리가 필요함.
  - 사례로. 발굴 대상자는 거주하지 않고 친모와 누나 내외만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들에게 복지서비스 안내문과 복지사각지대 홍보물품을 대신 전달하며 대상자와 연락될 시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드린 후 상담 종료함.
  - 가족 또는 친인척 연락망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사례로, 최초 전입신고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족 또는 가까운 친인척 1인 이상의 연락망을 필수적으로 파악해 둘 필요성이 있음

□ 경북 울진군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상이한 사례가 확인 될 경우 마을 이장 또는 주민, 집 주변 이웃을 통해 사실 확인하며, 근처에 있는 기관이나 다른 부서 협조를 구하는 등 대상자와의 접촉을 시도하며, 해당 주소지에 메모를 작성. 일정 기간이 지나도 확인이 되지 않을 시 비대상 처리
-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실거주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주소이전을 권유하나, 개인 사정에 의해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실거주지를 토대로 현물 지원을 하는 사례도 있었음.

□ 경북 안동시

-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방문했을 때 가족이나 친인척 등 지인의 주소지에 주소만 둔 경우가 많아 대상자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음.
- 그러나 원룸이나 주택 밀집가 또는 아파트에서는 대상지의 추가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움.
  - 이 경우 민원실의 협조를 얻어 전화번호를 확보하거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안내문을 주소지에 발송만하고 종결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주위에 물어보고 그래도 모르는 경우 미거주로 종료.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대상자와 연락 두절, 미거주 등으로 초기 상담을 진행하지 못할 시 대상자의 부모 및 형제 등과 연락하여 대상자 상황 파악
- 대상자와 연락 전혀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주소지에 복지사각지대 안내문 부착 및 현재 상황 상담일지에 기록

□ 서울 아동관리보장원

- 실거주 지자체가 먼저 평가나 사정을 한 후 복지시스템에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해당 주민등록상 지자체 담당자와 협업이 필요
  - 이러한 협업의 구조를 위해 경우에 따라 “시스템 권한 부여” 등의 조절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 지자체 마다 실거주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을 때 시도 단위의 관리

주체를 결정하거나 지원 지자체를 결정하고 협업 범위에 대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와 직접 발굴하는 지자체 담당자와의 협업도 필요

#### □ 경남 산청군

- 주소는 다른 지역으로 되어있고, 실제로는 우리 지자체에 거주하는 사례의 경우, 관련 사유에는 채무관계로 인하여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다르게 하고 있는 가구였음.
- 농촌의 특성상 주소가 되어 있지 않은 가구일지라도 대부분의 위기가구는 마을이장이나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행정에 신청, 이와 같은 경우 긴급지원을 제공하면서 주소이전을 할 수 있도록 안내
- 신용회복 관련 기관에 연계되어 연락처가 있는 사람들은 연락을 취하여 안부확인을 하고 있으므로 기본 연락처도 같이 통보해주시면 좋을 듯함(현재는 전화번호가 거의 기재되어 있지 않음)

#### □ 경기도 고양시

- 주소지와 거주지가 일치 하지 않은 것은 다양한 사유가 있고 혹은 단순한 누락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부채로 인한 과도한 추심을 회피하기 위한 일환의 사례가 많음
- 주소지와 거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복지행정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등록 정책 등 정책적 측면에서 대안과 개선방법 마련이 필요

#### 4. 사후조치 매뉴얼 부재에 대한 의견

▣ (질문) 복지급여 신청 및 상담 내역이 없어 사회보장시스템 내에 핸드폰 번호 등 연락처가 확보되지 않아 지자체가 추가적인 발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례 등 **사후조치 매뉴얼 부재 등으로 인한 정보 연계 상의 누락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현장에서 이러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확인이 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시오.

##### □ 전북 군산시

- 일단 우편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안내문 발송 및 가정방문을 통해 방문스티커를 부착하고, 통.리장이나 관리사무소, 복지관 등에 협조 요청을 통해 대상자 소재파악을 함.
- 서울 창신동 노모와 아들 사망사건('22년 4월), 수원시 권선구 세모녀 사망사건('22년 8월), 서대문구 다세대주택 모녀 사망사건('22년 11월)등 연락처 부재나 주민등록 미등재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존재
  - 이러한 경우 사후조치 매뉴얼이 부재하여 이러한 사망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지자체 및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의 잘못으로 부각되는 점에 해당 담당자의 의욕 상실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수행을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함.

##### □ 서울 광진구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상 위기정보 대상자에 대한 상담진행절차는 1차 우편물 발송, 2차 가정방문, 3차 안내문 부착 순으로 이

루어지며, 3차 진행후에도 연락이 안되는 경우 및 사회보장시스템상 정보가 없는 경우는 주민등록 단순열람 권한이 없어 추후 진행의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정보불일치의 경우 통장복지도우미, 집주인, 옆집거주자 등 대면으로 추가정보 확보하려고 하나, 옆집거주자 등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부담으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움 존재

- 이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정보 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 전화번호 열람 등 공식적인 권한부여 필요성 검토

#### □ 경남 의령군

- 대상자 정보부재로 인한 현황파악을 위해 1차적으로 주민등록 부서에 복지급여신청으로 부양의무자 파악서류(혼인증명서, 가족관계, 제적 등)를 직권으로 발급하면서 전화번호 등 과거기록을 확인
- 이 후 이장, 반장, 이웃주민, 복지위원, 노인회 임원을 통해 대상자의 정보를 파악하고자 함.

#### □ 경북 울진군

-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대상자는 거의 상담내역과 연락처가 없는 경우로, 그런 경우 마을 이장 또는 주민, 집 주변 이웃을 통해 확인하고 우편물 등에서 정보를 찾아보지만 그럼에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 단, 고용이력서비스를 통해 직장에 연락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많은 항의가 발생, 따라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면 민원



이 발생하는 반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사각지대를 놓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충남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 대한민국의 5대보험 정보는(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장기요양 보험등) 막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 복지, 의료, 교육 등의 자료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정보관리가 필요

□ 경북 안동시

- 주민등록 전산에 핸드폰 번호가 남아 있는 경우 민원실의 협조를 얻어 연락처를 확보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민원실에서도 연락처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인천 부평구

- 대상자의 가족 및 이웃 등에 문의, 주거지 수시 방문 등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최대한 대상자와 접촉을 시도하며, 이러한 방문 혹은 접촉 시도에 대한 기록을 상세히 남겨둠

□ 서울 아동관리보장원

- 기관 측면에서 연락처가 있는 경우더라도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우려는 항상 존재,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침이나 법적 해석이 필요한 상황
- 지자체가 추가 발굴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례 등이 다수 존재,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신고나 의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 지역주민들의 관심으로 의뢰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체계 마련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

□ 경남 산청군

- 시스템으로 자료 통보시 가구원 단위가 아닌 가구단위 통보가 필요하며, 당해연도에 한번 통보된 대상자는 재통보되지 않는 등 중복이 제거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전화번호가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주민등록시스템으로 전화번호를 열람하여 유선안내 및 발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통신비 체납, 고용보험 등 통보되는 대상자에 대한 전화번호와 근로사실 내역 등이 함께 통보가 가능하다면, 유선연락으로 1차 상담이 이뤄질 수 있으며,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근로사실 내역을 통해 이전에 근로했던 지역과 연계하여 발굴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복지사각지대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경기도 고양시

- 주소지 가정방문을 통해 현재 주소지 거주인 및 건물주 등에게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의 연락처 및 현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가 당사자가 아닌 이웃주민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 주소지 방문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조사대상 통보자의 연락처 및 현 주소지 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조사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함.

## 5. 제도 개선방안

■ (질문)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기정보 개선 등)

### □ 전북 군산시

- 발굴시스템을 촘촘히 개발하더라도 복지사각지대는 발생할 여지가 있음. 또한 위기가구를 발굴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급여의 대부분은 신청주의로 위기가구 본인이 신청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이면 급여신청이 어려운 것이 현실
  - 대다수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읍면동의 신청 절차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복지업무의 깔대기 효과(코로나19 재난지원금, 예방접종 안내, 지자체별 특수시책 등)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선제적인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 발굴된 위기 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위기가구 발굴이라는 목적 달성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일선 담당 공무원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이 부정확한 자료가 많아 양적인 데이터 확보보다 질적이고 위기가구를 최대한 걸러낼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확한 자료 입수가 행정력 낭비를 예방
- (사례: 경북) '복지사각지대 제로(ZERO) 정책'을 추진하면서 ▲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촘촘한 발굴 체계 구축 ▲마음안심 서비스

앱 보급 운영 ▲우리 동네 지키미 사업단 운영 ▲ 카카오톡 채널 '희망톡(TALK)' 개설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날 운영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사례: 서울 서대문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천사톡'(가입자: 1.3천명) 및 '천사챗봇'을 운영, 카카오톡채널과 챗봇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정보 제공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음.

#### □ 서울 광진구

- 위기정보의 중복 등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더라도 긴급지원 및 사회보장서비스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단순 서비스안 내로 상담이 종결되는 경우도 존재, 따라서 각각의 위기정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체납의 경우 기초수급자 등의 사회보장 서비스 신청은 안되어도 건강보험료 체납분에 대한 경감방안 등 각 부처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각각의 위기정보 대상자들은 각종 공과금은 체납되었지만 일용근로 등으로 기타 생계는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는 현재 위기정보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가 필요함

#### □ 인천 지역자활센터협회

-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는 신청주의로 복지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
-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편견과 낙인이 여전히 존재, 복지제도를 알고 있어도 주변시선을 의식해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음.

- 지역사회 민간시설과 기초지자체가 다양한 소통과 연대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충남 서천군

-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 대중매체를 활용하거나, 현수막 등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필요

□ 광주 광산구

-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정보로 제공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
  - 위기정보가 다양화 됨에 따라 실제 위기가구가 아님에도 대상자로 뜨는 경우가 있음.
  - 예를들어 교육, 직장 문제로 인해 원가정과 분리된 사회초년 청년계층(20~30대)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로 보기 어려우나 발굴관리 시스템에 등록되는 사례가 있음
- 기존 차수에서 복지 제도에 대한 안내 상담이 이루어졌거나 혹은 대상자의 주소지 상이, 부재 등으로 비대상 처리된 건은 새로운 정보(새로운 주소지, 연락처)가 추가되지 않은 이상, 중복을 제외하는 시스템이 필요
- 또한 가구원 정보가 아닌 가구정보 제공으로 대상자가 발굴되어 한 세대에 여러명의 대상자가 발굴되어도 하나의 상담 건으로 바로 처리 완료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되는 등 효율성 제고 필요

□ 경남 의령군

- 해당 주소지 미거주자의 경우, 복지대상자 발굴 차원에서 경찰관서에 수사의뢰 등 실증자에 준하는 대상자 파악이 필요하며, 생활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카드, 직불카드 사용내역) 등의 파악으로 대상자를 발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 경북 울진군

- 위기 정보 자료 추출에서 배부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 검토 필요
-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대상자에 사각지대 발굴하는 방안으로 인적기준이 아닌 주소지 기준별 자료를 주소지 해당 행정기관에 전송할 필요성이 있음
  - 예를 들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일 경우 기존 주소지에서는 거주불명으로 비대상이 되나, 실거주지에서는 주소가 없어 발견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음(2022. 11. 25일자 메스컴보도: 신촌 모녀 극단적 선택)
- 사각지대 발굴을 복지팀 고유의 업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복지 사각지대는 우리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중앙부처 차원에서 인식개선에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음.
  - 빠른 인식전환을 위하여 드라마나 예능 소재로도 언급하고 관련 다큐 프로그램도 늘리며, 마트, 대중교통, 병원 등 누구나 접하는 곳을 홍보 거점업소로 지정하여 홍보하는 등 접하기 쉽게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

□ 광주시 노인복지관

-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사전 교육이 실무자(공공,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민간에서 진행 중인 사회복지서비스(심리, 정서, 경제, 건강 등)를 연계하는 사후관리 시스템도 가동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복지자원들을 서로 공유하는 매뉴얼 제작과 교육도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서울 아동관리보장원

- 시스템의 정교함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리스트를 만드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 대상자를 찾아가보고 이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 지원을 위한 지침과 매뉴얼을 명확히 기술하고 담당 공무원의 관련 교육이 필요
- 또한 특별히 시스템 운영팀과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의 협업도 반드시 되어야 할 것

□ 경남 산청군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포착되지 않는 세대가 지역주민(마을이장, 의회의원 등)을 통해 발굴되는 건수가 훨씬 많으므로 기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인적 연계망을 정비하여 활성화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할 것임.

□ 충남 사회복지법인

-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별도의 사업이라기 보다 복지분야의 공공과 민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 영역 전체에서 기능하도록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복지사업 실시, 서비스 제공시에도 대상자 발굴시 연계할 수 있는 교육, 연계 체계 필요
  - 지역사회보장 전 영역의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발굴시 연계할 수 있는 체계 필요
- 또한 기존의 조직, 인력, 사업, 서비스지원 자원 및 인프라가 적절한지 사업 단계별 운영의 현실성 검토 필요





- 관계부처합동. (2020).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안)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SporTrgt.do>)
- 김은하. (2022).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4차 포럼(전문가 발표자료)
- 김태완, 김미곤 외.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 20년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12.30.),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발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 11. 17.),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 11. 23.), "춤춤한 위기가구 발굴로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발표.
- 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 보고서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2022). 2022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